
한일관계사학회

제205회 월례발표회

일시 : 2023년 3월 11일(토) 오후 2~6시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B2 세미나실

차 례

사회 : 연민수(전 동북아역사재단)

제1발표	
8세기 중엽 ‘新羅征伐’ 계획의 소멸과 ‘神功開寶’의 주조	발표 : 이재석(한성대학교) 토론 : 송완범(고려대학교)
제2발표	
조선 전기 조선 조정의 일본 지배층 이해 -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人名을 중심으로	발표 : 임현채(서강대학교) 토론 : 이해진(동국대학교)
제3발표	
근대일본의 여성노동과 여성노동자 ‘보호’	발표 : 김경옥(한림대학교) 토론 : 박미아(서강대학교)

제1발표

8세기 중엽 ‘新羅征伐’ 계획의 소멸과 ‘神功開寶’의 주조

발표 : 이재석(한성대학교)

토론 : 송완범(고려대학교)

【제1주제】

8세기 중엽 '新羅征伐' 계획의 소멸과 '神功開寶'의 주조

이재석 (한성대)

1. 머리말
2. '신라정벌' 추진 과정의 논점과 재구성
 - 1) 추진 과정의 개요
 - 2) 行軍式과 절도사 체제의 전개
 - 3) 주요 논점과 私見
3. '神功開寶'의 주조와 稱徳天皇
4. 맺음말

1. 머리말

孝謙(태상)천황은 764년(天平寶字 8) 9월 세칭 藤原仲麻呂의 난을 진압하고 동 10월에는 淳仁천황을 폐위하였으며 자신은 칭덕천황으로 重祚하였다. 난이 진압된 이듬해인 765년 기존의 천평보자 연호를 천평신호로 개원하였는데 동 9월에는 '神功開寶'라는 새로운 錢貨를 주조하였다. 이 논문에서 필자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신공개보' 주조의 정치성 즉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관한 것이다.

종래 '신공개보'의 주조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錢貨의 문제였던 만큼 주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렇지만 '신공개보'의 '신공'이 곧 심한정벌 전승의 주역인 신공황후를 연상하게 하며 주조의 한 해 전인 764년이라는 시점이 淳仁-仲麻呂 정권의 와해에 따른 소위 '신라정벌'¹⁾ 계획의 최종적 소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神功開寶'의 주조는 신라정벌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의 출발점이다.

2. '신라정벌' 추진 과정의 논점과 재구성

1) 추진 과정의 개요

'신공개보'의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논의의 순서상 750년대 말~760년대 초에 걸쳐 일본

1) '征伐'이라는 표현은 '征討'과 함께 그 원래적 의미가 "덕 있는 천자(조정)가 복속을 거부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무리(제후, 이민족..)를 치는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차등적 개념이다. 『속일본기』에는 "征新羅" 혹은 "伐新羅" 등으로 등장한다.

조정에서 추진된 신라정벌 계획에 대해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것처럼 신라정벌 계획에 관해서는 1924년에 발표된 和田軍一の 논문(「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劃について」)을 효시로 하여²⁾ 지금에 이르기까지 근 100년에 걸친 연구의 축적이 있으며 이 문제를 도외시한 채 8세기 중엽의 일본 조정의 정치사는 설명되기 어려우므로 그 동안 많은 관련 연구나 개설서에서 언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신라정벌 계획의 검증 자체를 목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연구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이 시기 신라정토 관련 논점의 정리와 그에 따른 추진 과정의 재구성 문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 정도는 피력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唐 현종 치세 말기에 발생한 소위 안사의 난(755년~763년)은 당의 지배체제의 근간을 뒤흔든 대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盛唐에서 晩唐으로 이행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으며 보다 거시적으로는 소위 당송변혁의 시발점으로서 그 구조적 변화에 대한 동아시아적 차원의 평가도 제기된 바 있다.³⁾

안사의 난 발발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난이 일어난 755년 11월부터 거의 만 3년 뒤인 758년 12월에야 나타났다. 聖武天皇의 喪을 고하기 위해 발해에 갔던⁴⁾ 遣渤海使 小野朝臣田守가 동년 12월 발해 사신 揚承慶과 함께 귀국하면서 당의 소식을 전하자 일본 조정은 즉시 大宰府에게 대책을 준비해 보고할 것을 명한 것이 최초의 반응이다.⁵⁾ 이듬 해 3월 大宰府가 管内의 4가지 어려운 상황(不安)을 보고한 것은 그에 대한 대책 준비를 위한 자체 점검의 결과물이었으며 동년 6월에는 신라 정벌을 위한 行軍式 작성을 시발로 정벌 계획은 본격화되어 간다. 신라 정벌 계획의 수립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대략적인 흐름을 『속일본기』의 기사를 중심으로 간단히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시기(年月)	정벌 준비 관련	외교 관련
758 (천평보자2)	2	小野田守, 遣渤海使 임명
	12	①小野田守, 귀국 및 당의 상황 보고 ②조정, 대재부에 대책마련 지시
	2	揚承慶의 귀국 때에 高元度・內藏全成을 함께 파견
	3	大宰府, 관내의 船・防人 문제 등 현황(4가지 “不安”) 보고
759 (동 3)	6	大宰府, 신라 정벌 위한 行軍式 작성
	8	大宰帥 船親王, 香椎廟에 신라 정벌을 고함
	9	3년 내 완성을 목표로 北陸道・山陰道・山陽道・南海道 諸国에게 선박 총 500척 건조를 분담시킴

2) 和田軍一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劃について」(『史學雜誌』35-10・11, 1924)

3) 박근칠

4) 酒寄雅志 「八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の情勢」(『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2001. 212-213쪽. 初出은 1977년)

5) 『속일본기』 천평보자 2년(758) 12월 무신조에 “遣渤海使小野朝臣田守等奏唐国消息曰, ..(중략)於是, 勅大宰府曰, 安祿山者, 是狂胡狡豎也. 違天起逆. 事必不利. 疑是不能計西, 還更掠於海東. 古人曰, 蜂蠆猶毒. 何況人乎. 其府帥船王及大式吉備朝臣真備, 俱是碩学, 名顯当代. 簡在朕心, 委以重任. 宜知此状, 預設奇謀, 縱使不来, 儲備無悔. 其所謀上策, 及応備雜事, 一々具録報来.”라고 나온다.

	12		內藏全成 귀국. 발해사 高南申 함께 입국
760 (동 4)	2		高南申 귀국 때에 陽候史玲璆를 발해에 파견
	11	授刀舎人・中衛舎人 등 6인을 大宰府에 보내 진법 등을 배우게 함	陽候史玲璆 귀국
761 (동 5)	1	美濃・武蔵의 소년 20명, 신라어를 배우게 함	
	8		高元度 등 唐에서 귀국
	10		高麗朝臣大山, 발해에 파견
	11	東海道節度使(藤原朝狩),南海道使(百濟王敬福), 西海道使(吉備朝臣真備)를 임명함	
762 (동 6)	1	東海.南海.西海道 등의 節度使에게 소요될 綿襖袴 각 2만2백5십구를 大宰府에서 만들게 함	
	2	①갑주 1천 領을 鎮國衛府에 비축함 ②伊勢.近江.美濃.越前 4국에 健兒를 선발함	
	4	大宰駑師를 배치	
	10		高麗朝臣大山 귀국 때에 발해사 王信福, 함께 입국
	11	훈련하는 신라정벌군을 위해 香椎廟에 폐백을 바침	
763 (동 7)	2		①王信福 귀국 때에 板振鎌束을 발해에 파견 ② 신라사 金體信 입국
	8	가뭄으로 山陽・南海道 절도사 폐지	
	10		板振鎌束 귀국
764 (동 8)	7	東海道 절도사 폐지	신라사 金才伯, 입국
	9	※ 惠美押勝의 난 및 敗死	
	10	※ 淳仁天皇 폐위	
	11	西海道 절도사 폐지	

2) 行軍式과 절도사 체제의 전개

이상의 진행 과정에서 볼 때 일단 모든 계획의 출발점은 대재부의 行軍式 작성에서⁶⁾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종의 작전계획의 수립인 셈이다.⁷⁾ 그리고 이 행군식 단계 이전에는 警固式の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다. 행군식 작성에 앞서 3개월 전에 대재부가 조정에 올린 大宰府 관내의 문제점 현황 보고에 “據警固式, 於博多大津, 及壹岐・對馬等要害之處, 可置船一百隻以上以備不虞. 而今无船可用, 交關機要. 不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⁸⁾ 그것을

6) 『속일본기』 천평보자 3년(759) 6월 임자조에 “令大宰府造行軍式, 以將伐新羅也.”라고 나온다.

7) 『新日本古典文學大系 續日本紀 3』(岩波書店, 1992, 320쪽)은 군대의 행동계획에 관한 세부적 규정(細目)으로 설명하고 있다. 行軍式에 대해 ...중국의 경우

8) 『속일본기』 천평보자 3년(759) 3월 경인조에 “大宰府言, 府官所見, 方有不安者四. 據警固式, 於博多大津, 及壹岐・對馬等要害之處, 可置船一百隻以上以備不虞. 而今无船可用, 交關機要. 不安一也. 大宰府者, 三面帶海, 諸蕃是待. 而自罷東國防人, 邊戍日以荒散, 如不慮之表. 萬一有變, 何以應卒, 何以示威. 不安二也. 管内防人,

말해준다.

이 警告式은 備邊式으로 불리기도 하며⁹⁾ 天平 4년(732)에 성립한 절도사 체제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¹⁰⁾ 즉 동년 8월에 東海・東山二道節度使, 山陰道節度使, 西海道節度使 임명이 있었는데¹¹⁾ 『속일본기』 寶龜 11년(780)조의 기사에 의하면 이 절도사 재임 시기에 경고식이 작성되었다고 한다.¹²⁾ 732년의 절도사 체제는 전년도인 천평 3년(731) 11월에 신설된 惣管(畿內)・鎮撫使(諸國) 제도를¹³⁾ 약 8개월 만에 바꾼 것으로서 이때의 절도사 체제는 직접 군대를 인솔해 군사활동에 나서는 것에 주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로 변경 방비체제의 매뉴얼을 수립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¹⁴⁾ 732년의 절도사 설치 및 警告(備邊)式 제정은 그 결과물에서 유추해 보자면 당시 일본이 급히 惣管・鎮撫使 체제를 수정해 절도사 체제로 전환하면서까지 변경의 해안 방비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 사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또한 그 시기 및 사건의 연관성이란 측면에서 유추해 보면 731년 신라의 일본 병선 300척 격파 사건 기사와¹⁵⁾ 무언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¹⁶⁾ 천평 6년(734)에 절도사는 폐지되었는데 그 직무 내용은 지방관(國司主典 이상)에게 승계되었다.¹⁷⁾

한편 행군식 체제는 공격을 위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방비 위주의 경고식 체제와는 그 기본 성격이 다르다. 상식적인 견지에서 생각해 볼 때 필자는 일본의 신라정벌 실현에는 최소한 4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작전 계획의 수립, 둘째 정토군의 지휘 체계 편성, 셋째 병사의 선발(편성) 및 훈련, 넷째 섬나라라는 특성상 선박의 제조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 등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부가적 요소를 추가한다면 遠征의 정신적 버팀목으로서 神의 가호를 들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상식적인 견지라고 하였지만 위 도표의 경과 흐름을 보면 일본의 신라정벌 계획은 후술하는 것처럼 이러한 상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전 계획의 수립은 곧 행군식의 작성이며 행군식의 작성 이후 처음 한 것은 香椎廟에 가

一停作城，勤赴武藝，習其戰陳。而大貳吉備朝臣眞備論曰，且耕且戰古人稱善，乞五十日教習而十日役于築城。所請雖可行，府僚或不同。不安三也。天平四年八月廿二日有勅，所有兵士全免調庸，其白丁者免調輸庸。當時民息兵強，可謂邊鎮。今管內百姓乏絕者衆。不有優復无以自贍。不安四也。勅，船者宜給公糧，以雜徭造。東國防人者衆議不允。仍不依請。管內防人十日役者，依眞備之議。優復者，政得其理民自富強。宜勉所職以副朝委。”라고 나온다.

9) <出雲國計會帳> 天平五年十二月六日節度使符에는 “備邊式”으로 되어 있다.

10) 北啓太「天平4年の節度使」(『奈良平安時代史論集 上』, 吉川弘文館, 1984, 542-547쪽), 大原良通「唐の節度使と日本の遣唐使」(『史泉』77, 1992, 51-52쪽)

11) 『속일본기』 천평 4년(732) 8월 정해조에 “正三位藤原朝臣房前爲東海東山二道節度使。從三位多治比真人縣守爲山陰道節度使。從三位藤原朝臣宇合爲西海道節度使。道別判官四人，主典四人，醫師一人，陰陽師一人。”이라고 보인다.

12) 『속일본기』 보귀 11년(780) 7월 정축조에 “勅。安不忘危，古今通典。宜仰緣海諸國，勤令警固。其因幡・伯耆・出雲・石見・安藝・周防・長門等國，一依天平四年節度使從三位多治比真人縣守等時式，勤以警固焉。又大宰依同年節度使從三位藤原朝臣宇合時式。”이라고 보인다.

13) 『속일본기』 천평 3년(731) 11월 정묘조에 “始置畿內惣管，諸道鎮撫使。以一品新田部親王，爲大惣管。從三位藤原朝臣宇合爲副惣管。從三位多治比真人縣守爲山陽道鎮撫使。從三位藤原朝臣麻呂爲山陰道鎮撫使。正四位下大伴宿祢道足爲南海道鎮撫使。”라고 나온다.

14) 大原良通「唐の節度使と日本の遣唐使」(『史泉』77, 1992, 52쪽)

15) 『삼국사기』 신라본기 성덕왕 30년(731) 4월조에 “日本國兵船三百艘，越海襲我東邊。王命將出兵，大破之。”라고 나온다.

16) 다만 300척 규모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한 사건의 실체가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을 수 있음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7) 『속일본기』 천평 6년(734) 4월 임자조

서 신라 정벌을 고하며 신의 가호를 비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선박의 제조를 지시하였다. 군대 편성보다 선박 제조를 우선시킨 것은 역시 섬나라의 특성상 선박이 필수 전제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사료-1> 『속일본기』 천평보자 3년(759) 9월 壬午条

造船五百艘. 北陸道諸国八十九艘, 山陰道諸国一百卅五艘, 山陽道諸国一百六十一艘, 南海道諸国一百五艘. 並逐閑月營造, 三年之内成功. 為征新羅也.

이 선박(戰船)의 건조 명령에 대재부의 西海道는 빠져 있다.¹⁸⁾ 이는 아마도 동년 3월에 있었던 大宰府의 관내 현황 보고에 대해 조정이 선박 부족 문제에 대해 “船者宜給公糧, 以雜徭造.”라는 방침을 그때 이미 하달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명령의 중복을 피하고자 한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울러 여기에 보이는 선박의 제조 시한 즉 “三年之内”를 신라정벌의 단행 예정 시기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¹⁹⁾ 759년 9월부터 3년은 762년 9월까지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三年之内成功”과 후속하는 “為征新羅也”는 분리해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전자는 문자 그대로 제조 시한을 명시한 것이며 후자는 이 선박 제조의 용도(목적)가 신라 정벌에 있음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이것이 곧 정벌의 단행 시기까지 나타내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장구조상 “為征新羅也”는 앞의 문장 전체를 받는 것이지²⁰⁾ “三年之内成功”에만 걸리는 문장은 아니다. 정벌 단행은 어차피 선박이 완성되는 762년 9월 이후의 어느 시점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선박이 완성된다고 바로 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 편성과 훈련 등의 요건이 어떻게 완비되어 가도록 설정되어 있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토군의 지휘 체계 및 그 편성은 東海道節度使(藤原朝狩), 南海道節度使(百濟王敬福), 西海道節度使(吉備朝臣真備)의 임명에 반영되었다. 필자는 신라정토군의 핵심 요체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선박에 태울 병사와 지휘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료를 보자.

<사료-2> 『속일본기』 천평보자 5년(761) 11월 丁酉条

以從四位下藤原惠美朝臣朝狩為東海道節度使. 正五位下百濟朝臣足人, 從五位上田中朝臣多太麻呂為副. 判官四人, 錄事四人. 其所管遠江・駿河・伊豆・甲斐・相摸・安房・上総・下総・常陸・上野・武蔵・下野等十二国, 檢定船一百五十二隻, 兵士一万五千七百人, 子弟七十八人, 水手七千五百廿人. 數内二千四百人肥前国, 二百人对馬嶋. 從三位百濟王敬福為南海道使. 從五位上藤原朝臣田麻呂, 從五位下小野朝臣石根為副. 判官四人, 錄事四人. 紀伊・阿波・讃岐・伊予・土佐・播磨・美

18) 아울러 東海・東山道 방면도 빠져 있는데 후술하는 761년 11월 성립의 절도사 체제에서는 동해・동산도 방면의 諸國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기에 따라서 편성 대상의 차이가 보이는 것은 예컨대 천평보자 2년(758) 12월 병오조(“徵發坂東騎兵・鎮兵・役夫及夷俘等, 造桃生城・小勝柵. 五道俱入, 並就功役.”)에 桃生城・小勝柵의 조영에 坂東의 인력이 징발되고 있거나 천평보자 3년(759) 11월 신미조에 “勅坂東八國. 陸奥國若有急速索援軍者, 國別差發二千已下兵. 擇國司精幹者一人, 押領速相救援.”라고 보이는 것처럼 東海・東山道 방면은 일차적으로 동북방의 非常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시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19) 예컨대 酒寄雅志 「八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の情勢」(『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2001. ****쪽)

20) 『속일본기』에 이런 유형의 문장 기사는 散見한다.

作.備前.備中.備後.安芸.周防等十二国, 檢定船一百廿一隻, 兵士一万二千五百人, 子弟六十二人, 水手四千九百廿人. 正四位下吉備朝臣真備為西海道使. 從五位上多治比真人土作. 佐伯宿祢美濃麻呂為副. 判官四人, 録事四人. 筑前.筑後.肥後.豊前.豊後.日向.大隅.薩摩等八国, 檢定船一百廿一隻, 兵士一万二千五百人, 子弟六十二人, 水手四千九百廿人. 皆免三年田租, 悉赴弓馬, 兼調習五行之陳. 其所遺兵士者, 便役造兵器.

위의 내용은 761년 11월에 東海道節度使(藤原朝狩-百濟朝臣足人・田中朝臣多太麻呂), 南海道節度使(百濟王敬福-藤原田麻呂・小野石根), 西海道節度使(吉備真備-多治比土作・佐伯美濃麻呂) 체제를 동시에 발족시켜 관할 諸國의 船-兵士-子弟-水手를 檢定하고 군사 훈련 및 무기 제조를 총괄하게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사료-1>의 선박 제조 명령과 비교하면 北陸道・山陰道・山陽道에 대한 명기가 보이지 않는 등 일정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천평보자 3년(759)			천평보자 5년(761)			
영역	제조	수량	영역	검정	수량	
北陸道諸國 (원래 7국=若狹・越前・加賀・能登・越中・越後・佐渡)	船	89척	東海道 (12국+肥前・對馬) (遠江・駿河・伊豆・甲斐・相摸・安房・上総・下総・常陸・上野・武蔵・下野+肥前・對馬) * 上野・武蔵・下野는 東山道 소속 ²¹⁾ * 肥前・對馬는 西海道 소속	船	152척	肥前 (2400), 對馬(200) 포함
				兵士	15700	
				子弟	78	
				水手	7520	
山陰道諸國 (원래 8국=丹波・丹後・但馬・因幡・伯耆・出雲・石見・隱岐)	船	145	南海道(12국) (紀伊・阿波・讃岐・伊予・土佐・播磨・美作・備前・備中・備後・安芸・周防) * 播磨・美作・備前・備中・備後・安芸・周防는 山陽道 소속	船	121	
				兵士	12500	
				子弟	62	
				水手	4920	
山陽道諸國 (원래 8국=播磨・美作・備前・備中・備後・安芸・周防・長門)	船	161	西海道(8국) (筑前・筑後・肥後・豊前・豊後・日向・大隅・薩摩)	船	121	
				兵士	12500	
				子弟	62	
				水手	4920	
南海道諸國 (원래 6국=紀伊・淡路・阿波・讃岐・伊予・土佐)	船	105				
합 ; 船 500척			합 ; 船 394척 / 兵士 40700 / 子弟 202 / 水手 1736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道를 기준해서 볼 때 759년의 선박 제조 담당 영역과 761년의 선박 檢定 대상 영역이 다르다는 점(南海道만 일치, 北陸・山陰道는 전체가 761년 단계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음), 둘째 761년의 남해도 12국에는 총 7국의 山陽道 소속 국이 포함되어 순수하게 南海道만이라고는 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西海道 소속의 肥前・對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東海道에 인적 제공하고 있는 점,²²⁾ 넷째 東海道 12국에는 肥前・對馬

21) 武蔵國은 보귀 2년(771)에 東山道에서 東海道로 편입되었으며(『속일본기』 보귀 2년 10월 기묘조) 천평보자 단계에서는 동산도 소속이었다.

22) 東國防人の 운용과 연관되어 있을 지도 알 수 없다.

외에도 총 3국의 東山道 소속 국이 관할로 포함되어 있는 점, 다섯째 759년의 경우는 선박 제조 할당 국명이 명시되지 않아 各道 휘하의 모든 소속 국이 제조에 참여하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761년의 경우는 개별 道 휘하의 모든 國이 제조(혹은 兵士~水手の 제공)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²³⁾ 여섯째 선박의 제조 총량이 500척과 394척으로 106척의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이다. 특히 선박의 총량은 759년의 단계의 경우 대재부 주관으로 경고식 규정에 따라 100척 이상의 선박 제조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759년 단계의 예상 선박 총량은 최소 600척 이상이 되어, 서해도가 포함된 761년의 394척에 비하면 약 200척의 차이가 나는 셈이 된다.

759년의 선박 제조와 761년의 선박+兵士~水手 검정은 업무 자체가 다르기에 단순 비교는 곤란하지만 유일하게 선박에 관해서만큼은 양자 비교가 가능하기에 그 의미를 되새겨볼 여지가 있다. 과거 和田軍一은 이 선박의 총량 차이(즉 제조 선박 숫자의 축소)를 정토 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생긴 계획의 변경으로 해석하였으며²⁴⁾ 현재 이러한 견해가 통설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정벌 계획은 추진하는 과정에 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특히 선박 제조 담당이 759년의 명령과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명백하게 계획의 수정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또한 肥前·對馬의 東海道 이전 또한 현실적인 사정에 근거한 계획의 조정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총량의 문제를 계획 수정의 결과로 환원해버리는 것은 과연 타당할까?

자칫 모든 것을 계획 수정 탓으로 돌려버리면 이것은 결국 논의를 <언제나 그런 일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일반론으로 귀착시키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필자는 이 문제를 푸는 힌트는 바로 절도사의 임명과 함께 추진된 것이라는 점과 남해도·서해도의 船·兵士·子弟·水手の 수가 각각 121척-12500명-62명-4920명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²⁵⁾

우선 各 道 내지 지역 國의 현실적 사정이 제각각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생각해보면 거기서 조달할 수 있는 선박·인원의 수치 또한 제각각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선박·인원의 수치가 자연 상태에서 동일하게 산출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럼에도 상기 수치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 수치가 결국 인위적으로 설정된 목표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치를 '檢定'한다는 것은 주어진 목표치를 기준으로 관할 지역의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감독함을 말한다.²⁶⁾ '檢定'이란 그런 의미이다. 그리고 이 할당된 동일 목표치를 자기 관할 영역 내에서 조절·감독하여 결과물을 도출해내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東海, 南海, 西海道節度使들의 임무이자 책임 권한이었던 것이다.

23) 원래 東海道 관할은 伊賀·伊勢·志摩·尾張·三河·遠江·駿河·伊豆·甲斐·相模·安房·上総·下総·常陸國 등 14개 국이지만 이 중 關東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5개 국(伊賀~三河)이 제외되어 있으며 南海道 6국의 경우는 淡路國이, 西海道 9국 중에는 肥前國이 관할 道에서 제외(관할 변경이지 부담 제외는 아님)되어 있다. 山陽道 8국에서는 長門國을 제외한 나머지 국들이 남해도 관할로 이동해 있으며 東山道の 경우는 원래 관할 10국(近江·美濃·飛騨·信濃·諏方·上野·下野·武蔵·陸奥·出羽) 중에서 近江·美濃·飛騨·信濃·諏方·陸奥·出羽國 7국은 제외되고 上野·武蔵·下野國 3국만이 포함되어 있다.

24) 和田軍一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劃について」(『史學雜誌』35-10・11, 1924)

25) 東海道の 경우는 兵士~水手の 총인원 15,700명 중에서 肥前·對馬에서 제공된 총 2600인을 빼면 순수하게 東國 일대에서 차출된 인원은 13,100명으로 이는 南海, 西海道の 12,500명과 비교하면 약간 많은 수에 불과하다. 아울러 선박 152척 상정은 121척에 비해 약 30척 많은데 이는 아마도 東海·東山道 방면이 선박 제조에 유리한 점이 있었던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근거 추가). 아울러 東海·東山道 방면은 동북방의 에미시(蝦夷) 집단과의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사정도 고려 대상이며 상기 東海道の 물자와 인원을 對신라 전선에 투입할지 여부는 정책당사자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26) 和田軍一

그럼 이 인위적인 수치의 출처는 어디였을까? 그것은 현재로서는 신라정벌 계획의 출발선인 행군식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 추정이 타당하다면 759년의 500척의 선박 제조와 761년의 선박+兵士~水手 검정, 이를 위한 절도사체제의 도입 등은 모두 행군식에 기초한 행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²⁷⁾ 예컨대 선박의 목표치가 왜 하필 121척이었을까? 보기 좋은 목표치를 제시할 요량이었다면 120척이나 100척 등과 같은 끝이 딱 떨어지는 숫자가 동원되지, 마지막 1척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매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121이라는 수치가 제시된 것을 보면 이것은 무언가의 숫자에 기초하여 선박의 제조 수치를 산출한 결과라는 인상을 갖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西海道の 선박 제조 방식을 추측케 하는 사료가 하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759년 3월 大宰府가 管内 4가지 ‘不安’ 중 대재부를 포함한 要害之處의 선박 부재 상황에 대한 보고 기사인데 이에 대한 조정의 下命은 “船者宜給公糧, 以雜徭造” 즉 公糧을 지급하여 雜徭로써 건조하라는 것이었다.²⁸⁾ 주지하는 것처럼 잡요는 원래 식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正丁 기준 최대 60일 이내의 力役이었지만²⁹⁾ 이번 대재부의 선박 제조에 임해서는 식량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西海道 최전방 要害之處의 선박 사정이 이러할 정도(“今无船可用”)였다면 타 지역의 선박 사정은 더 열악했을 지도 알 수 없으며 이 조정의 公糧 투입-선박 제조 방안을 받아든 대재부는 3개월 뒤 행군식을 작성하면서 타 지역의 선박 제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公糧 투입안을 적용해서 일정한 수치를 계상해내었다고 한다면 지나친 상상일까? 선박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투입되는 公糧의 전체 액수를 기준으로 선박 건조 수를 도출한 뒤 이를 상기 兩道에 균등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방안을 마련하였다면 121척이라는 수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편 500척의 선박 제조 안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761년 단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했음을 추측케 하는 사료가 있다. 그것은 바로 山陽道節度使의 존재다. 상기 <사료-2>에서는 東海·南海·西海道節度使만이 임명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천평보자 7년(763) 8월에 南海道節度使와 함께 山陽道節度使를 중지한다고 되어 있다.³⁰⁾ 그리고 762년 정월에 節度使 관련 綿襖袴 각 20250具의 제작에 東海·南海·西海道節度使만이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는 점을³¹⁾ 감안하면 山陽道節度使는 762년 정월 이후에서 763년 8월 이전의 어느 시기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³²⁾

27) 전술한 것처럼 절도사 체제는 이미 천평 4년(732)에 경험한 바가 있으며 이전의 警告式-절도사 체제를 이번엔 行軍式-절도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대재부의 관인들에게 그리 어려운 아이디어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병력의 구체적 수치는 몰라도 행군식 자체에 절도사의 임명 필요성이 명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절도사 체제의 도입 여부는 어디까지나 정책결정자의 판단의 몫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8) 『속일본기』 천평보자 3년(759) 3월 경인조(주 **에 전제)

29) 부역령 37조. 신일본고전문학대계 속일본기3 암파서점, 1992, 309의 두주

30) 『속일본기』 천평보자 7년(763) 8월 무자조에 “山陽・南海等道諸國旱. 停兩道節度使.”라고 나온다.

31) 『속일본기』 천평보자 6년(762) 정월 정미조에 “造東海.南海.西海等道節度使料綿襖袴各二万二百五十具於大宰府. (하락)”이라고 나온다.

32) 일단 사료상에 山陽道節度使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제 <표-2>에서 山陽道の 소속 8국(播磨・美作・備前・備中・備後・安芸・周防・長門)은 761년 절도사체제가 성립할 때 長門國만 제외한 7국이 모두 남해도절도사 관할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 점, 그리고 동 표에서 759년 145척의 선박 제조를 할당받은 山陰道 소속 8국(丹波・丹後・但馬・因幡・伯耆・出雲・石見・隱岐)은 761년의 체제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점, 전술한 것처럼 天智 4년(732) 8월에 처음 성립한 절도사 체제에서 존재했던 것이 山陰道節度使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설된 절도사가 산양도절도사가 아니라 산음도절도사였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설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려면 山陽道節度使가 사실은 山陰道節度使의 誤記였음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기사에 오기가 없고 그대로 山陽道節度使가 확실하다는 점을 전제로 유

그럼 山陽道節度使의 역할은 무엇이였을까? 아마도 상기 <사료-2>의 船·兵士·子弟·水手를 檢定하고 군사 훈련 및 무기 제조를 총괄하는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검정 수치도 앞서 남해도와 서해도의 그것이 일치했던 것처럼 산양도절도사에게 할당된 책임 수치도 그와 비슷 내지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船·兵士·子弟·水手의 수치인 121척-12500명-62명-4920명이 산양도절도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산양도절도사가 선박 121척을 검정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절도사에 의해 검정되어야 할 총 선박 수는 394척이 아니라 515척이 되며 이는 당초 설정된 500척 선박 제조에 근접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행군식 단계의 500척 제조 방안이 761년의 절도사 3인체제의 성립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안이었음을 시사한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단지 산양도절도사의 임명 자체가 지연된 것일 따름이지 계획 자체가 축소되거나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마도 원래 행군식 안에는 총 4인의 절도사 체제로서 신라 정벌에 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편 <사료-2>에서는 절도사 체제의 활동과 관련하여 신라 정벌의 예정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종래 신라정벌 계획의 소멸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기사가 주목받았다.

<사료-3>『속일본기』 천평보자 6년(762) 11월 경인조

遣參議從三位武部卿藤原朝臣巨勢麻呂，散位外從五位下土師宿祢犬養，奉幣于香椎廟。以為征新羅調習軍旅也。

신라 정벌을 위해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군대를 위해 조정이 香椎廟에 폐백을 바쳤다는 내용인데 이 기사가 종종 인용되는 이유는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신라 정벌과 관련된 사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酒寄雅志는 이를 정토계획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원인으로 동년 6월의 효검상항과 순인천항 간의 帝權 분열 상황의 도래 등 조정 내부의 정치적 대립 심화를 언급하였다.³³⁾

물론 상식적인 견지에서 국가의 권력 중추부에 심각한 정치적 내부 대립이 발생하였다면 그 여파로 遠征의 계획 등에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정권 차원의 총력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위의 사료는 조정 차원의 신라 정벌군 지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료는 될 수 있어도 이 사료에서 정벌 계획의 소멸을 읽어낼 수는 없다. 더군다나 동년 6월에 있었던 효검상항의 帝權分離 선언이라는³⁴⁾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1월의 香椎廟 방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신라 정벌군의 운용의 키맨은 바로 절도사들이다. 군사 편성과 훈련에서 무기 제조까지 정벌에 필요한 실제적인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기에 절도사 체제의 종식이 곧 신라 정벌 단행의 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한다. 이 절도사들의 존재에 주목하지 않기에 상기 사례처럼 <사료-3>에서 소멸을 꼬집어내기 시작하고 나아가 그 배경으로서 신라정벌 군대의 문제와는 무관한, 조정 내부의 정치적 혹은

추해 보면 어찌되었든 그는 산음도 諸國 및 북록도의 일부를 자기 관할(他 절도사의 경우처럼 8국~12국 이내의 규모?)로 하여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33) 酒寄雅志 「八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の情勢」(『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2001. 223-225쪽)

34) 『속일본기』 천평보자 6년(762) 6월 경술조에 "사료"라고 나온다.

외교적 상황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절도사는 좀 더 존속하였다.

<사료-4> 『속일본기』 천평보자 8년(764) 7월 임자조

罷東海道節度使.

<사료-5> 『속일본기』 천평보자 8년(764) 11월 을사조

罷西海道節度使.

앞서 천평보자 7년(763) 8월에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南海道・山陽道節度使가 폐지되었음은 언급하였는데 東海道節度使와 西海道節度使는 그 이듬해 7월과 11월에 각각 폐지되었다. 동년 9월과 10월이 藤原仲麻呂의 몰락과 순인천황의 폐위로 이어진 격동의 시기였음을 상기해 보면 신라정벌 계획의 최종적 소멸 시기는 천평보자 8년(764)이며³⁵⁾ 정치적 격동의 종식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절도사에 의한 신라 정벌군 통솔 체제는 언제까지 예정되어 있었을까? 물론 최종적인 출병의 단행은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 판단에 의하겠지만 절도사들에 통솔되는 신라정토군의 편성-훈련 등의 일련의 과정의 시한은 행군식에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앞서 필자는 천평보자 3년(759) 9월에 내려온 500척 선박 제조 및 3년 이내 완성이라는 조건의 명령이 곧 3년 이내에 신라로의 출병이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필자는 출병으로의 준비 기한은 절도사의 임명 때에 비로소 그 시한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사료는 <사료-2>의 마지막 부분인 “皆免三年田租, 悉赴弓馬, 兼調習五行之陳. 其所遺兵士者, 便役造兵器.”이다. 절도사들이 관리, 감독해야 할 兵士・子弟・水手에 관해 궁마와 진법 등의 숙달 필요성과 병사들의 무기 제조 동원 등에 관한 언급 부분에 이들에게 모두 3년 동안의 田租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이 명령의 시점이 천평보자 5년(761) 11월이었기에 이 田租 면제는 이미 해 저물어 가는 761년 당해 연도부터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라³⁶⁾ 이듬해부터 3년 간 즉 762~764년까지 적용되는 혜택임을 짐작할 수 있다.

군사 훈련과 무기 제조 등에 전념하게 될 병사 등에 대한 田租 면제 혜택이 왜 3년간으로 책정된 것일까? 이는 최소한 그들의 노고가 향후 3년 동안은 이어질 것임을 알려주는 메시지였다고 볼 수는 없을까? 만약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절도사의 신라정벌군 운용 체계가 향후 3년간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764년은 천평보자 8년으로서 실제로 東海道節度使와 西海道節度使가 최종 폐지되는 것도 바로 이해였다. 물론 南海道・山陽道節度使의 경우처럼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 등의 영향으로 1년 앞서 폐지되는 일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南海道・山陽道節度使의 폐지는 신라 정벌 추진력의 일각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며 신라 정벌의 가능성은 그 만큼 더 멀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왜 東海道・西海道節度使는 이듬해까지 존속했을까? 여기에는 정치적 상황과의 연관성이라는 변수도 고려해야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서 필자는 원래 매뉴얼 자체에 정토군의 출정을 염두에 둔 운용 체제는 향후 3년을 기한으로 일단 가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이 행군식의 골격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두고자 한다.

35) 송완범 「8세기 중엽 '신라정토' 계획으로 본 고대 일본의 대외방침」(『한일관계사연구』25, 2006, 205쪽)

36) 참고로 田令 2조에 田租는 9월에 起輸해 11월 30일 이전에 納畢토록 되어 있다.

3) 주요 논점과 私見

종래 신라정벌 계획에 대한 논점 중의 하나가 이 정책의 추진자는 藤原仲麻呂였으며³⁷⁾ 따라서 藤原仲麻呂 정권의 붕괴와 정토계획의 소멸이 궤를 같이하는 것은 그것을 증명한다는 견해가 있다.³⁸⁾ 또한 이 정토계획이 처음부터 신라를 실제로 침공할 의도였는가 하는 점에서도 논점이 갈리고 있다. 藤原仲麻呂는 처음부터 실제 정토의 단행을 예정하고 있었다기 보다는 자신의 권력 강화와 국내의 권력 집중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일종의 국내용설,³⁹⁾ 처음부터 발해와 연합하여 실제로 공격할 의도였으나 발해의 변심과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로 인한 상황 반전으로 결과적으로는 침공이 좌절되었다는 渤海연합 침공의도설⁴⁰⁾ 등이 있다. 후자의 논점과 관련해서는 발해가 실제로 일본과 신라 협공을 위한 공조관계(동맹)를 맺었는가 여부도 하나의 쟁점이었으며 종래의 양자 동맹설에 대해 근래 양자 동맹은 일본의 희망이었던지는 모르나 발해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지지를 넓혀가고 있다.⁴¹⁾

이하 간단하게 필자의 생각을 언급해두고 이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발해와의 동맹 운운에 대해 그를 뒷받침할 사료는 필자가 보기에 현재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가장 인상적인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 해당 시기 발해의 견일본사가 武官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점인데⁴²⁾ 이를 근거로 동맹론으로까지 논의를 확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발해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신라를 견제해주기를 희망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으나 그것과 동맹 여부는 별개 문제이다. 현재 필자는 당시 발해의 입장이 신라 견제를 전제로 한 현상 유지였다는 주장에 호감을 느낀다.

신라 정벌의 추진자 문제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즉 藤原仲麻呂가 당시 최고의 권세가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이 정책의 추진력의 형성에 그의 역할이 상당하였으리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그의 개인적 야망 혹은 권세에 대한 욕망으로 점철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藤原仲麻呂 개인 차원의 문제로 환원해서 설명하는 것은 사안을 왜소화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라 정벌 案이 나름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당시 신라에 대한 반감·불만의 고조에 기초한 일본 조정 지배층 다수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 藤原仲麻呂 개인에 대한 지지 때문은 아

37) 신라 정벌의 추진 문제를 藤原仲麻呂의 개인 역량의 문제와 결부시켜 논의를 전개한 것은 和田軍一 「淳仁朝に於ける新羅征討計劃について」(『史學雜誌』35-10・11, 1924)에서 시작한다.

38) 일반적으로 신라 정벌 계획이라고 하면 곧 藤原仲麻呂가 연상될 정도로 종래 양자 관계는 마치 논의의 당연한 전제인 것처럼 취급된 감이 있다.

39) 예컨대 北山茂夫 「藤原惠美押勝の亂」(『日本古代政治史の研究』, 岩波書店, 1959, 353-360쪽), 岸俊男 『藤原仲麻呂』(吉川弘文館, 1969), 구난희 「일본의 신라침략계획 추진의도」(『청람사학』2, 1998, 128쪽), 연민수 「통일기 신라와 일본관계」(『古代韓日交流史』, 혜안, 2003, 273-274쪽) 등을 들 수 있다.

40) 예컨대 石井正敏, 「初期日渤海交渉における一問題-新羅征討計劃中止との關聯をめぐって-」(『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吉川弘文館, 2001, 초출은 1974), 酒寄雅志 「八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の情勢」(『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2001), 한규철 『발해의 대외관계사』(신서원, 1994), 박진숙 「발해 문왕대의 대일본외교」(『역사학보』153, 1997) 등의 연구가 있다.

41) 예컨대 송완범 「8세기 중엽 '신라정토' 계획으로 본 고대 일본의 대외방침」(『한일관계사연구』25, 2006), 노태돈 「8세기 중엽 신라·일본 관계의 전개」(『한국사론』63, 2017), 조이욱 「신라 경덕왕대 국내외정세에서 본 일본의 '신라정토계획」(『신라문화』46, 2015) 등의 연구가 있다.

42) 石井正敏, 「初期日渤海交渉における一問題-新羅征討計劃中止との關聯をめぐって-」(『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吉川弘文館, 2001)

니었다.⁴³⁾ 그런 점에서 淳仁-藤原仲麻呂 정권을 무너뜨린 칭덕상황에게도 신라 정벌 추진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신라 정벌 계획의 추진이 실제 藤原仲麻呂에게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도 사실 의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가문의 위광을 돋보이게 하는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⁴⁴⁾ 그것이 이 정책의 성격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또한 군비 확충 및 군사비 지출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신라정벌의 추진이 오히려 집정자에게는 정치적 부담과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과연 이 정책의 추진이 藤原仲麻呂에게 계속 정치적 이익을 부여해주었을까 의문이다. 특히 가뭄과 역병 등 각종 재난이 연이어 들이닥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까지 설명해 온 신라 정벌 계획의 추진이 단지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행군식의 작성에서 시작하여 선박의 제조, 절도사 체제의 발족 등은 어찌되었든 신라 정벌을 기치로 내건 일본 조정의 정책 의지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실제 정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절도사 체제가 將軍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했는데⁴⁵⁾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이 곧 이 정책이 미완 내지 실패한 것이었음을 잘 말해준다.⁴⁶⁾ 또한 764년 9월 藤原仲麻呂의 거병에 이르는 과정에서 藤原仲麻呂 자신이 기존의 절도사 체제의 무력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⁴⁷⁾ 또한 이 단계의 절도사 체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⁴⁸⁾

신라 정벌 계획의 좌초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상기 제 논점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상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자연재해의 빈발에 따른 민생 피해, 일본 조정의 권력 투쟁(淳仁-藤原仲麻呂 vs 칭덕상황)으로 인한 추진력 상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재편에 따른 상황의 변화 등이 거론된다.⁴⁹⁾ 필자도 이러한 설명에 큰 이의는 없다. 전술한 것처럼 신라 정벌 계획의 요체인 절도사 체제가 남해도절도사 등의 경우처럼 가뭄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그 유지 어려움에 직면해 결국 폐지된 사실은 이 시기의 어려움을 무엇보다 잘 전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신라 정벌 계획에 관한 종래의 논의는 여기에서 멈춰 있다. 계획 자체가 말소되었으니 더 이상 이 건은 주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물론 신라 정벌 운운은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동안의 일이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 없

43) 예컨대 송완범도

44) 예컨대 藤原仲麻呂가 그의 부친 藤原武智麻呂의 신라정벌에 대한 유업을 계승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岸俊男, 283쪽, 이재석..

45) 예컨대 에미시 집단을 정토할 때 鎮守府將軍 혹은 征夷大將軍 등의 將軍府 체제가 수반되었는데 만약 신라 정토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가칭 '征新羅(大)將軍'의 성립과도 같은 군제의 재편이 먼저 선행되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46) 다만 처음부터 절도사 체제 정도에 머물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실제 출병으로까지 갈 생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출병 의도 부정설에 입론의 여지가 생기는 것도 바로 이 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47) 『속일본기』 천평보자 8년(764) 9월 병신조에 “以太師正一位藤原惠美朝臣押勝，爲都督使四畿內三關近江丹波播磨等國習兵事使”라고 나온다. 전술한 것처럼 동년 7월에 東海道節度使가 폐지된 상황이었으며 당시 잔존하고 있던 절도사는 서해도절도사가 유일하였다.

48) 물론 藤原仲麻呂의 난이 畿內-近江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전개된 점과 신속하게 승패가 정해졌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라 정벌 준비에 동원된 절도사 체제 하의 무력과 藤原仲麻呂의 난의 상관관계에 대해..

49) 김은숙 「8세기 신라와 일본의 관계」(『국사관논총』29, 1991, 126쪽), 송완범, 203-207쪽

었다는 듯이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신공개보'의 주조야말로 신라 정토 소동의 마지막 장식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장을 바꾸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3. '神功開寶'의 주조와 稱徳天皇

주지하는 것처럼 천평보자 8년(764) 9월 등원중마려의 거병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동 10월 순인천황은 폐위되고 칭덕천황의 重祚가 실현되었다. 칭덕천황은 이듬해 정월 연호를 天平神護로 改元하였다.

<사료-6> 『속일본기』 천평신호 원년(765) 정월 을해조

改元天平神護. 勅曰, 朕以眇身, 忝承寶祚. 無聞德化, 屢見姦曲, 又疫癘荐臻. 頃年不稔, 傷物失所, 如納深隍. 其賊臣仲麻呂外戚近臣, 先朝所用. 得堪委寄, 更不猜疑. 何期包藏禍逆之意. 而鳩毒潛行於天下, 犯怒人神之心. 而怨氣感動於上玄. 幸賴神靈護國風雨助軍, 不盈旬日, 咸伏誅戮. 今元惡已除, 同歸遷善. 洗滌舊穢, 与物更新. 宜改年号. 以天平寶字九年, 爲天平神護元年. 其諸國神祝宜各加位一階. (하락)

天平神護로의 개원은 賊臣 仲麻呂의 난을 신의 가호("賴神靈護國")로 신속하게 진압하였기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다. 神護는 곧 "神靈護國"에서 集字한 것이다. 칭덕천황은 天平神護 3년(767) 8월에 參河國의 慶雲 출현 보고를⁵⁰⁾ 계기로 同월에 바로 神護景雲으로 다시 개원하였는데⁵¹⁾ 여기서도 '神護'字만은 버리지 않았다. 칭덕천황이 얼마나 이 '神護'를 자기의 집권 이데올로기적 기반의 하나로 중시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게다가 諸國神祝에게 위계를 수여하고 있는 것도 신의 가호로 인해 난의 평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서 천평신호로 개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담고 있었다.⁵²⁾ 각주=와타나베 나오히코 일본고대관위제도연구..

그리고 天平神護 원년 9월이 되자 칭덕천황은 느닷없이 神功開寶를 주조하여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760년에 주조한 萬年通寶(銅錢)・大平元寶(銀錢)・開基勝寶(金錢)이 나온지 불과 5년 만의 新화폐 주조였다.⁵³⁾ 神功開寶에 관한 관련 사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7> 『속일본기』 천평신호 원년(765) 9월 정유조

更鑄新錢. 文曰神功開寶. 与前新錢, 並行於世.

<사료-8> 『속일본기』 천평보자 4년(760) 3월 정축조

勅, 錢之爲用, 行之已久. 公私要便莫甚於斯. 頃者, 私鑄稍多, 僞濫既半. 頓將禁斷, 恐有騷擾. 宜造新樣與舊並行. 庶使無損於民有益於國. 其新錢文曰萬年通寶, 以一當舊錢之十. 銀錢文曰大平元寶, 以一當新錢之十. 金錢文曰開基勝寶, 以一當銀錢之十.

50) 『속일본기』 神護景雲 원년(767) 8월 을유조

51) 『속일본기』 神護景雲 원년(767) 8월 계사조

52) 渡辺直彦 「神階勳位の研究」(『日本古代官位制度の 기초적研究』)

53) 일본 고대의 貨幣 문제에 대한 근년의 연구서로는 榮原永遠男 『日本古代錢貨流通史の研究』(塙書房, 1993), 동 『日本古代錢貨研究』(清文堂出版, 2011), 森明彦 『日本古代貨幣制度史の研究』(塙書房, 2016), 三上喜孝 『日本古代の貨幣と社会』(吉川弘文館, 2005), 동 『貨幣の誕生 - 皇朝錢の博物誌』(〈朝日選書〉朝日新聞社, 1998), 東野治之 『貨幣の日本史』(〈朝日選書〉朝日新聞社, 1997) 등이 있다.

<사료-9> 『속일본기』 보귀 3년(772) 8월 경신조

太政官奏，去天平寶字四年三月十六日，始造新錢與舊竝行。以新錢之一當舊錢之十。但以年序稍積，新錢已賤，限以格時，良未安穩。加以百姓之間，償宿債者，以賤日新錢一貫，當貴時舊錢十貫。依法雖相當，計價有懸隔。因茲物情擾亂，多致誼訴。望請，新舊兩錢，同價施行。奏可。

<사료-10> 『속일본기』 보귀 10년(779) 8월 임자조

勅，去寶龜三年八月十二日，太政官奏，永止舊錢，全用新錢。今聞，百姓徒蓄古錢，還憂無施。宜聽新舊同價竝行。

神功開寶보다 앞서 발생된 <사료-8>의 萬年通寶(銅錢)・大平元寶(銀錢)・開基勝寶(金錢)은 기존의 동전 和同開稱(<사료-8>의 舊錢)에⁵⁴⁾ 대해 각각 10배・100배(新錢인 만년통보의 10배)・1000배(銀錢인 대평원보의 10배)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하고 발행되었는데 <사료-7>의 神功開寶는 “前新錢” 즉 萬年通寶와 “並行”하여 유통하도록 한 것이므로 神功開寶와 萬年通寶는 等價로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和同開稱의 사용 금지에 대한 언급도 없기 때문에 和同開稱과 萬年通寶・神功開寶 세 동전이 동시에 유통되게 된 셈이다.⁵⁵⁾ 그리고 그에 대한 가치의 조절이 770년대 보귀 연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료-9・10>이다.

그런데 이러한 神功開寶의 주조 상황을 보면 곧장 의문이 생긴다. 기존의 萬年通寶와 등의 동전이 필요하다면 만년통보의 발행 양을 더 늘리면 되는데 왜 새로운 화폐를 주조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즉 신화폐 주조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없고⁵⁶⁾ 이전 화폐와의 주조 간격도⁵⁷⁾ 이례적으로 짧은 神功開寶를 왜 필요로 했을까?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그 정치적 배경을 살펴본 연구에 利光三津夫와 寺西貞弘가 있다.⁵⁸⁾

그 선행 연구를 간단히 요약하면 神功開寶의 주조는 역시 藤原仲麻呂의 패망 이후의 亂後 처리의 일환으로서 일종의 <仲麻呂 지우기>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천평보자 연간의 新錢 주조(<사료-8>)가 철저히 당시의 권세가 藤原仲麻呂의 정치・경제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그를 패사시킨 칭덕천황의 입장에서는 그의 주요 시책을 부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新錢의 주조에 임해서 과거 ‘神功’이란 연호를⁵⁹⁾ 만든 당(武周)의 측천무후에 대한 동경과 신공황후의 삼한 정토의 재현을 企圖하는 念을 담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이때는 ‘신공황후’라는 漢風 시호도 만들어져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⁶⁰⁾ 신공황후의 ‘신공’ 字를 新錢의 이름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모순이 없었음을 지적하였다.⁶¹⁾

이상의 지적은 필자도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필자는 예컨대 칭덕천황이 “정토군의 선두

54) 和同開稱의 주조는 『속일본기』 和銅 원년(708) 5월 임인조에 “始行銀錢”，3개월 뒤인 동 8월 기사조에 “始行銅錢”이라고 나온다.

55) 榮原永遠男 『日本古代錢貨流通史の研究』(塙書房, 1993, **쪽)

56) 新錢 발행시에는 대개 舊錢보다 10배의 가치를 부여해 국가가 경제적 폭리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 패턴이었다. 영원영원남..

57) 고대 화폐의 주조 간격 제시

58) 利光三津夫 「神功錢鑄造をめぐり史的背景」(『續律令制とその周辺』, 慶應大法學研究會, 1973), 寺西貞弘 「神功開寶流通試論 -社會・政治史的一考察-」(『古代史の研究』3, 1981)

59) 『資治通鑑』唐紀二十二에 “神功元年<時以契丹破滅，九鼎就成，以九月大享，改元爲神功>”이라고 나온다.

60) 판본태랑 설. 천평보자 6년 정월에서 동 8년 8월 사이에 淡海御船에 의해 일제히 찬진되었다고 보는 것
○ 통설임

61) 利光三津夫

에 서서 武威를 西方에 빛내는 날이 가까이오기를 기원하면서 ‘신공’이란 鑄銘을 선택한 것”이라는⁶²⁾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면 이미 신라 정토군의 편성 및 파병은 물 건너 간 상태였기에 새삼 정토군의 역할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당시 상황과 맞지 않다. 오히려 필자는 神功開寶의 주조가 765년의 9월이란 점을 주목하고 싶다. 왜냐면 764년 9월에 藤原仲麻呂의 거병~패사가 모두 한꺼번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에서 이듬해 9월은 말하자면 전승 1주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神功開寶의 주조의 성격에는 일종의 “전승 1주기 기념주화”와 같은 측면이 있다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이미지로서의 ‘神功’과 연호로서의 ‘神護’의 상호교차성 속에서 칭덕천황은 여성천황으로서의 존재감을 신공황후·측천무후에 빗대어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해 두고 싶다.⁶³⁾ 또한 사람들에게 삼한전승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신공개보의 주조를 통해, 또한 이 신공개보를 香椎廟를 위시한 신사 등에 봉납하는 행위를⁶⁴⁾ 통해, 지난 몇 년간 일본의 정치·사회의 화두 중의 하나였던 신라 정벌 문제를 그렇게 매듭짓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4. 맺음말

62) 利光三津夫, 144쪽

63) 효경(칭덕)천황의 重祚 및 존재감 문제와 신공황후·측천무후와의 연관성 사이에는 흥미로운 논점들이 다수 개재되어 있다. 별고에서 생각해보고 싶다.

64) 신사 등에서 錢貨가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다는 발굴사례 및 전화가 갖는 주술적 기능 등 포함 **보충. 錢貨의 화폐**로서의 기능보다 주술적 기능을 중시하는 견해도 이런 측면에서 유래한다.

【토론문】

「8세기 중엽 ‘新羅征伐’ 계획의 소멸과 ‘神功開寶’의 주조 에 대한 토론문

송완범(고려대학교)

1. 神功開寶의 형상

-세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2. 후지와라 나카마로의 '신라정벌계획'

-정밀한 사료 취급, 深読み가 추측...

3. 神功開寶의 의미

-皇朝十二錢 중의 세 번째 동전인 만큼 황조12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 각 전화마다의 주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니 그 속에서 神功開寶의 논의가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萬年通寶와 神功開寶 사이의 주조 간격이 황조12전 중 가장 짧은 것 등은 논지 보강.

-萬年通寶가 나카마로 때의 화폐였으니, 神功開寶의 발행은 승자 쇼토쿠천황과 당시의 실력자 道鏡의 의도가 나타난 것(森明彦, 「奈良時代末期の錢貨をめぐる矛盾と対策」)이라는 견해가 이미 보인다. 도경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지 않을까.

-고대일본 최초의 금전 開基勝寶와 은전 大平元寶의 의미는 '신라원정 준비'와 어떤 식의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신구화폐 및 금전과 은전의 등장에 따른 교환 비율의 문제로 이익을 위한 私鑄錢의 문제도 대두되었을 법한데 이에 대한 언급은...

-「神功開寶가 '전승 1주기 기념주화'라는 주장은 탁견이라는 전제"를 깔고서 두어 가지 생각. 만약, 神功開寶의 神功이 한반도를 의식한 표현이라면, '신라정벌'을 중단시킨 쇼토쿠와 도쿄는 굳이 神功을 사용한 전화를 주조했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종래의 연구사에서 神功의 여성성을 소환하여 神功황후와 측천무후의 연호, 그리고 쇼토쿠여제와의 어떤 관련성을 연상하는 주장을 계승하려면, 관련 논거의 보강이 필요.

-종래 연구 중에 神功開寶는 북해도의 시레토코(知床)반도에서도 발견. 오호츠크문화권의 위

신재라는 언급도 보인다.

[참고] 松村恵司, 「日本初期貨幣研究史略」, 『IMES Discussion Paper Series』, 2004- J -14

제2발표

조선 전기 조선 조정의 일본 지배층 이해 -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人名을 중심으로

발표 : 임현채(서강대학교)

토론 : 이해진(동국대학교)

조선 전기 조선 조정의 일본 지배층 이해 -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人名을 중심으로

임현재(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¹⁾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조-일 교류의 시작과 조선의 源平藤橘 이해
- III. 조선의 對馬宗家 성씨 인식과 平氏
- IV. 나오며

I. 들어가며

공적인 문서에는 대개 발신인과 수신인에 대한 정보가 드러난다. 이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신뢰를 주고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다. 동시에 문서의 격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한 만큼, 그 이름에 따른 책임도 뒤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외교문서와 같이 국가급 규모의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문서를 발송하고 수신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양한 형태로 서로를 드러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사료의 특성상 지배층의 교류 혹은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조선과 일본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통신사 파견 시기 일본국왕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깊이 이루어져 왔다. 해당 분야의 연구가 일단락된 지금은 지배 최상층뿐 아니라 수많은 등장인물들에 대한 심층연구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일본 측 내부 쟁소에 따라 그 향방이 정해진 일본국왕호 문제(이른바 ‘大君外交體制’ 관련 논쟁)와는 별개로, 조선 측 내부 논의나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호칭’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당연하겠지만, 조선은 일본으로서도 어느 정도 격을 갖춰야 하는 대상이었다. 게다가 일본의 대조선외교가 츠시마[對馬]에 공식적으로 일임된 세키가하라 전투[関ヶ原の戦, 1600] 이전까지는 일본의 서부 지역 무가 귀족(다이묘)들이 직접 ‘조선국왕’과 소통하였다. 그 과정에서 쇼군과 바쿠후 체제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무로마치 다이묘들은, 조선에 보내는 글에 자신들의 인명을 최대한 격을 갖추어 써야 했다.

그런데 그 작성법은 철저하게 일본의 기준에서 격을 갖춘 것이었다. 따라서 대표 관직과 성명만으로 기술하는 중국-한국식 작성법과는 달리, 일본인들의 서한에는 우지[氏]·카바네[姓]·묘지[苗字·名字]·소령지·관명·이름(휘 혹은 법명)을 모두 활용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일본 역시

1)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46208).

한국·중국처럼 우지·카바네·묘지를 굳이 병렬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단일한 성씨만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일본인들에게 위 개념은 모두 중요했다. 우지는 주로 大主으로부터 받은 職掌 혹은 고유의 地名에서 유래하였으며, 그 世襲 品위를 조정에서 명료히 하기 위한 것이 카바네였다.²⁾ 일본의 氏姓制度는 8세기에 한 차례 八色姓으로 정비되면서 신라의 骨品制度和 유사해졌으나, 동시에 카바네는 아손[朝臣]으로, 우지는 겐페이토키츠[源平藤橘] 4개로 편중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윽고 우지와 카바네만으로는 특정 인물의 명칭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지자, 각 가문을 구별하기 위해 나온 것이 묘지다.³⁾ 휘는 종종 불교식 이름인 法名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본인의 인명을 한국·중국식으로 표기하는 경우, 우지·카바네·묘지 중 하나만 알려져 성씨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묘지 개념이 어느 정도 자리잡은 무로마치 바쿠후[室町幕府] 시기 이후 일본인들의 인명은, 현대에는 대다수가 마지막까지 쓴 묘지와 휘의 조합으로 알려져 있다.⁴⁾

상술하였듯이 무로마치 바쿠후 시기에는 이미 묘지가 일본의 지배층 내에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일본 내부에서도 문서의 성격에 따라 우지·카바네·묘지·소령지·관명·휘 중 일부만 활용하는 예도 적지 않다. 무사 집단 가운데서는 통칭으로 관명이나 그를 기초로 한 소령지에 토노[殿]나 사마[様]를 붙여 표현하기 때문에,⁵⁾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를 추적하는 작업도 여의치 않다. 그만큼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지나 카바네가 갖는 의미는 국내 연구에도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7~8세기 고대사 분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나라[奈良]~헤이안[平安] 시대 한반도에서 건너간 백제계 성씨 연구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2020년 한국에서 일본 고대 씨족 정보를 담은 『신센쇼지로쿠[新撰姓氏錄]』(815)가 번역 출간⁶⁾된 것이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동향은 『신센쇼지로쿠』와 관련성이 멀어지면 곧바로 그 의미가 희석되는 경향도 보인다. 따라서 견당사 이래 공식적인 교류가 가능했던 무로마치 바쿠후~에도 바쿠후[江戸幕府] 시기 연구에서, 한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⁷⁾ 일본에서도 전근대의 복잡한 성명체계

2) 5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지역 유력 씨족이나 호족 등이 조정에 참여하였는데, 야마토[大和]의 대왕은 이들에게 우지[氏]를 주어 고유 직업을 세습하게 했다. 따라서 우지의 출발점은 본래는 동족집단(Clan)과는 달랐지만, 우지의 장인 우지가미[氏上] 아래에 모이는 동질성을 갖고 있었다. 한편 카바네[姓]는 본래는 그 職掌을 뚜렷히 하기 위해 조정에서 나누어 준 것이나, 본래 職掌의 경중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계층에 따른 카바네의 구별이 이루어졌다(李基東, 「新羅의 骨品制度和 日本의 氏姓制度」, 『역사학보』94·95, 1982, pp.144~149).

3)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묘지 역시 처음에는 그 명칭을 쓰는 이의 지명 등에서 유래한 경우가 다수였다. 하지만 세대를 거치면서 분가·입양·전봉 등으로 지배 권역과 묘지가 일치하지 않게 시작하여,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가문명으로 자리잡았다(阿部武彦, 『氏姓』, 東京: 至文堂, 1976, pp.120~128). 이 지점은 중세 유럽 귀족들의 성 제도와도 유사하다. 유럽 귀족들은 토지 중에서도 성곽의 지명에서 유래한 성을 가졌으며, 자연스럽게 성곽을 지닌 귀족들로부터 그 아래 사람들로 성이 전달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11~12세기에 관할 성곽을 잃고도 성은 유지하거나, 관할 성곽이 넓어져도 기존 성을 유지하였다(홍찬숙, 「유럽에서 성(surname)과 가족성(family name)의 출현 및 그 의미: 기혼여성의 지위 변화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30(2), 2020, 49~50쪽).

4) 그 때문에 본래는 예외사례여야 할 히데요시조차, 일본에서도 20세기까지는 명확히 구분이 되질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로 알려져 있지만, 토요토미는 칸파쿠[関白] 취임을 전후하여 텐노[天皇]로부터 받은 우지다. 히데요시는 죽을 때까지 하시바[羽柴] 묘지를 사용하였다(黒田基木, 『羽柴を名乗った人々』, 東京: 角川選書, 2016, 9~10頁). 그 전까지는 토요토미를 하시바에서 改姓한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5) 이케가미 료타 저, 이재경 역, 『도해 전국무장』, AK Trivia Book, 2011, pp.52~53.

6) 佐伯有清 저, 연민수 역주, 『新撰姓氏錄』, 동북아역사재단, 2020.

7) 국내 한일관계사 분야에서는 한문종이 向化倭人を 포섭하는 과정에서 賜姓했을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한문

를 일본사 내부 맥락에서만 당연히 여기고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⁸⁾ 다만 메이지 유신 직후에도 일본에서는 姓氏(氏姓)가 갖는 신분 가치는 어느 정도 남아 내려왔다. 당연히 조선에 발송하는 문서에 우지나 카바네가 들어가 있다면, 일본 측에서는 자신들의 의전과 용례를 따라 그 글자를 넣었을 것이다.⁹⁾ 이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등 조선 측 기록에 남아있는 이상, 어떠한 의미가 담겨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한 축으로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 남은 奉書 기록을 중심으로, 조선이 일본인 지배 계층이 사용하는 姓氏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집중해서 볼 것이다. 2장에서는 이 시기 일본에서 어느 정도 겐페이토키츠[源平藤橘] 4대 우지가 보편화되었는데, 조선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주로 볼 것이다. 3장에서는 조선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츠시마의 성씨와 그 변찬 과정을 조선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封貢疾徐 혹은 交隣이라는 이름 하의 ‘국제질서(World Order)’를 설명하고 보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는 다른 각도로, 조선이 교류하는 일본이라는 상대의 지배 세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정도를 알아보는 게 주 목적이다.

II. 조-일 교류의 시작과 조선의 源平藤橘 이해

한반도 국가와 일본의 교류는 唐 멸망 이후 사실상 없다시피했다. 그 후로는 카마쿠라 바쿠후[鎌倉幕府, 1185~1333] 시기 고려가 원에게 항복한 후, 원의 일본 원정에 종군한 것이 양국 간의 유일한 공식적 접촉이었다. 그 이후 양국의 관계는 일본 측의 ‘倭寇’로 출발하였다. 고려 忠定王 2년(1350) 2月 倭寇와 관한 기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¹⁰⁾ 恭愍王代(1351~1374)에는 흥건적을 비롯하여 고려의 주된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단 왜구는 교류의 대상이 아닌 징벌의 대상이므로, 고려나 조선이 이들과 서한을 주고받을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왜구로 인한 被擄人 送還이 공식적인 ‘교류’의 자리가 되었다. 鄭夢周(1337~1392)가 일본 큐슈탐다이[九州探題]였던 이마가와 사다요[今川貞世, 1326~1420?]과 협상에 나선 것이다.

이마가와 사다요는 일반 인명보다는 법명인 了俊(了俊)으로 알려져 있었다. 『高麗史節要』에는 정몽주와 了俊이 협상을 했던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가을 7월, 정몽주가 일본에서 돌아왔다. 九州道節度使(큐슈탐다이: 발표자) 了俊이 周孟仁을 보내 같이 왔다.¹¹⁾

중, 『조선전기 향화·수직 왜인 연구』, 국학자료원, 2001, pp.72~74, <표4>가 유일하다.

8)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일본의 무로마치~에도 바쿠후 시기 연구도 일본사 내부 연구는 종종 확인할 수 있지만, 한일관계사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에서는 벗어나 있다. 국내 일본사 분야에서도 무로마치~에도 바쿠후 시기 성씨를 ‘언급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9) 일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혈연집단의 세습성이 人名의 형태로 표면에 크게 드러나면서, 센고쿠 시기인 16세기, 능력에 해당하는 器量 혹은 器用이 점차 부각되면서 官位로 발전하기도 한다(박수철, 「血統과 器量으로 본 16세기 일본 ‘高名’ 사회」, 제42회 동양사학회 동계연구토론회 자료집, 2023. 2.를 참조). 다만 여전히 우지, 카바네, 묘지가 ‘혈연집단’을 바탕으로 한 위계의 상징임은 변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무대’의 성격이 강한 조선·명과 일본이 교류를 시작한 시기인 무로마치 바쿠후 초기에는 더욱 그 면모가 강했다.

10) 『高麗史』卷37 世家 卷37, 忠定王 2年 2月.

11) 『高麗史節要』卷30, 禡王 4年 7月, “秋七月. 鄭夢周還自日本. 九州道節度使了俊, 遣周孟仁偕來.”

이 기록에서 사다요는 ‘源了俊’, 즉 우지인 미나모토[源]와 법명인 료순[了俊]으로 이름을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묘지인 이마가와[今川]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사다요라는 이름은 조선에서는 살펴볼 수 없다. 이마가와라는 글자조차도 단 한 차례 치쿠젠노쿠니[筑前州] 이마가와[今川]로 등장할 뿐이다. 한편 趙浚(1346~1405)가 사다요에게 보낸 회신(조선 태조 3, 1394)에서는 그를 源公으로 칭하기도 했다.¹²⁾ 조선에서도 적어도 ‘源了俊’의 성이 源이라는 것을 파악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본인들이 사용하던 인명 체계에는 묘지[苗字·名字]나 카바네[姓]도 있었으며, 이 역시 실록에 등장한다. 우선 실록에 등장하는 묘지들은 주로 쇼니도노[少弐(小二)殿], 오우치도노[大内殿], 오토모도노[大友殿] 등 ‘殿’자와 함께 활용되었다. 그런데 이 ‘殿’자를 사용한 사료군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개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일본인이 그 인물을 언급할 때 쓰는 형태로 일관된다. 이는 일본에서 토노[殿]를 쓰는 용례와 유사하므로, 실질적인 의미는 특정 인물보다는 그 지역 영주를 가리키는 대명사에 더 가깝다. 물론 奉書에 묘지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殿’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므로 봉서의 격에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의 봉서에서는 어지간하면 우지를 기록하며 추가로 묘지를 넣기도 한다.¹³⁾

간혹 격을 더 따진 봉서에서는 카바네[姓]까지 넣기도 한다. 이 시기 카바네는 대부분이 아손[朝臣]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따라서 미나모토노 아손[源朝臣]이나 후지와라노 아손[藤原朝臣]을 자칭하는 봉서는 종종 등장한다. 심지어 오우치 가의 경우는 타타라 씨[多々良氏]에 아손까지 넣는 등 비교적 많은 용례가 보인다.¹⁴⁾ 하지만 조선에서 이 뜻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姜)孟卿이 말하였다. “무나카타 샤무[宗像社務] 氏經과 일찍이 통신하였다. 지금 무나카타 아손[宗像朝臣] 氏正이 사신을 보내왔다. 이는 그의 자손인가?”

(藤)仇郎가 말하였다. “무나카타도노[宗像殿]는 단 하나, 아손 씨의 정통 자손입니다.”

맹경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샤무 씨와 아손 씨는 무엇이 다른가?”

仇郎가 말하였다. “샤무 씨라 하는 자는 城隍의 제사를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샤무 씨라 합니다.”¹⁵⁾

위 기사는 당시 右議政이었던 姜孟卿(1410~1461)이, 受職人이자 츠시마 측 사람이었던 후지 쿠로[藤九郎]에게 문답한 내용이다. 강맹경은 宗像朝臣이 宗像社務와 관련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조선 측 사료에 따르면 宗像社務氏는 치쿠젠[筑前]을 관할하는 인물인 듯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 宗像社務를 쓰는 자로 ‘宗像社務氏經’과 ‘宗像社務氏顯’ 2개 명칭이 등장하는데,¹⁶⁾ 이 사료군만으로 氏經과 氏顯이 인명인지 단정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강맹경의 의도가 社務와 朝臣의 차이를 묻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답변한 후지 쿠로는 氏와 經을 끊어서 해석하여, 무나카타도노는 朝臣氏의 정통 후예임을 강조하였다.¹⁷⁾ 이에 강맹경은 후지

12) 『태조실록』권6, 3년 10월 11일.

13) 『태조실록』권8, 4년 12월 16일; 『태종실록』권14, 7년 7월 21일 등.

14) 『조선왕조실록』 전체에서는 연산군대까지 걸쳐 총 8건이며, 義弘과 教之 2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15) 『세조실록』권1, 1년 7월 24일, “孟卿曰, 宗像社務氏經, 往年通信. 今宗像朝臣氏正, 遣使來. 此其子孫乎? 仇郎曰, 宗像殿但一, 朝臣氏正統之孫也. 孟卿曰, 然則, 社務氏, 朝臣氏, 何異乎? 仇郎曰, 云社務氏者, 主祀城隍. 故稱社務氏.”

16) 『태종실록』권23, 12년 4월 28일; 권29, 15년 4월 22일.

쿠로의 의도에 맞춰, ‘社務氏’와 ‘朝臣氏’의 차이를 물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본 측 답변자는 社務와 朝臣의 의미를 카바네에 맞춰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강맹경은 답변에 따르면 우지여야 할 무나카타 대신, ‘社務氏’를 朝臣과 대비하여 社務를 우지인 것처럼 되물었다. 그러나 더 이상 인명과 관련한 질문은 이어지지 않았는데, 조선으로서는 카바네인 ‘아손’의 의미를 굳이 깊게 이해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듯하다.

그러므로 조선이 일본인의 ‘성’을 파악하는 기준점은 일반적으로는 우지가 된다. 그런데 이 시기 일본에서는 이미 미나모토를 비롯하여 타이라[平], 후지와라[藤原], 타치바나[橘] 4개로 우지가 수렴하는 현상이 일어난 지 제법 오래되었다.¹⁸⁾ 그 4대 우지인 겐페이토키츠[源平藤橘]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왕조실록』(1394~1494)에 등장하는 源平藤橘 우지 기사의 일자 수

우지/(조선)묘호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계	비율(%)
미나모토[源]	9	1	58	151	9	51	173	5	344	801	52.7
타이라[平]	1	0	30	52	2	3	57	0	100	245	16.1
후지와라[藤原]	2	0	18	125	14	28	87	3	182	459	30.2
타치바나[橘]	0	0	0	0	0	0	0	0	14	14	0.9
계	12	1	106	328	25	82	317	8	640	1,519	

※ 『조선왕조실록』에서 源, 平, 藤(騰)·藤(騰)原(源), 橘자가 등장하는 일자 수를 첫 기사가 나오는 조선 태조 3년(1394)부터 조선 성종 25년(1494)까지 정리하였다. 같은 날에 여러 명이 등장하더라도 1건으로 처리하되, 그 날에 다른 우지가 등장할 경우는 각 우지마다 1건으로 간주하였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 다른 사료군에 계속 등장하더라도, 일자를 기준으로 다른 건으로 보았다.

이 표에 따르면, 단연 源氏が 기사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서는 이마가와 사다요 이외에 본격적으로 다양한 ‘源氏’들이 등장한다. 사다요의 후임 큐슈담다이는 시부카와 미츠요리[渋川満頼, 1372~1446]로, 큐슈담다이에 취임하자마자 姓名字號小印을 조선에서 발급받고자 하였다.¹⁹⁾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 인물의 묘지인 시부카와를 쓰지 않고, 우지와 법명의 조합인 源道鎮으로 기록하였다. 그 외에 사츠마[薩摩]의 源賴秀, 이키[壱岐]의 源良喜, 스루가[駿河]의 源圓珪, 요부코[呼子]의 源瑞芳, 히젠[肥前]의 源昌清 등 수많은 ‘源氏’가 조선에 글과 예물을 올리고 피로인을 송환한다는 단편적인 기사가 다수 등장하였다. 보통은 우지인 源과 함께 휘를 넣었지만, ‘一向州太守源氏島津元久’처럼 源氏에 묘지인 시마즈[島津]까지 기술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²⁰⁾ 그 절정은 아시카가 바쿠후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満, 1358~1408]로, 그는 明 永樂 元年(1403) 皇帝로부터 日本國王으로 공식 冊封을 받았다.²¹⁾ 조선에서 공식 책명인 ‘日本國王源道義’가 등장하는 건 이듬해인 1404년(조선 태종 4)이며, 이후 무로마치 바쿠후의 쇼군들은 대외적으로 日本國王을 칭하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源氏를 빼지는 않았다.²²⁾

17) 『신센쇼지로쿠[新撰姓氏錄]』에도 무나카타노아소미[宗形朝臣]는 등장하지만(주 6)의 책 中, 149쪽; 409쪽. 각 원문 『新撰姓氏錄』卷15 右京神別下「地祇」宗形朝臣; 卷19 河内國神別「地祇」宗形郡, 社務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답은 일본 내부의 사정을 제법 정확히 반영하였을 것이다.

18) 源平藤橘로 우지가 수렴하는 시기는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85], 그 중에서도 이미 9세기경에 일어난 일이다(주 3)의 책, 113~119頁).

19) 木村拓, 『朝鮮王朝の侯国的立場と外交』, 東京: 汲古書院, 2021, 122頁.

20) 『세종실록』권1, 즉위년 10월 14일.

21) 『太宗文皇帝實錄』卷24, 永樂 元年 10月 11日.

22) 다만 당시 조선에서는 日本國王號 자체의 변천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지, 일본 측 서신에서는 日本國源으로

源氏가 源平合戦 이래로 쇼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권위를 상징하게 되었기 때문인지, 源氏 계열의 수가 유독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이미 영향력이 상당히 낮아진 橘氏를 제외하면,²³⁾ 이른바 다자외교를 하는 조선에서는 源氏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藤原氏の 등장 빈도도 상당히 높다. 전체 비율은 30% 정도지만, 源氏와 비교했을 때는 60% 정도의 비율로 자주 등장하였다. 심지어 사츠마의 島津家は 처음에는 우지로 源氏를 쓰다가 곧 藤原氏로 바꾸어 쓰기도 했다.²⁴⁾ 여기서도 미나모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의 奉書에는 직함과 성씨(주로 우지) 및 휘를 사용한 인명체계가 주로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글을 보내고 토산물을 바쳤다고 짧막하게 기록하는 기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사관이 참고한 문서도 이러한 작법에 기반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타이라[平]는, 비록 비중만으로 본다면 조선 성종대(1469~1494)에 제법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16%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본 무가사회에서 平氏が 갖는 위상을 생각하면 의외로 낮은 수치다. 또한 平氏は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활용례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 주로 ‘太守’나 승려들인 源氏나 藤原氏에 비해, 平氏は 『조선왕조실록』에서 向化人·受職人 출신이 두드러진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은 平原海인데, 이 인물은 증으로 조선에 귀화해 의술을 다룬 向化人이었다고 한다.²⁵⁾ 조선 세조대(1455~1468)에 들어서는 그 가문이 조선 국왕으로부터 昌原 본향을 받기까지 하였다.²⁶⁾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平道全은 널리 알려진 츠시마 쪽 향화인으로, 조선과 츠시마를 잇는 역할을 주로 맡아서 하였다.²⁷⁾ 물론 平氏 가운데서도 太守(守護大名)급 인사들이 예물을 바치는 모습,²⁸⁾ 圖書 발급을 청하는 이들²⁹⁾도 종종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다른 우지에 비해 상당히 적다. 달리 말하면, 平氏를 지닌 일본 내 중요 인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실제로 조선에서 인지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조선에서는 平氏が 일단은 성씨임을 인지하기는 했으나, 源氏에 비해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양상을 알 수 있다. 이는 명칭 표기법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조선왕조실록』(1394~1494)에 등장하는 일본인 봉서의 명칭

우지[氏]	카바네[姓]	묘지	조선 측 회신
미나모토[源]	아손[朝臣]	종종 등장	源+이름, (묘지)+源公
후지와라[藤原]	아손[朝臣]	종종 등장	藤(原)+이름, 藤公
타이라[平]	‘平朝臣宗’ 외에 없음	‘平朝臣宗’ 외에 없음	平+이름
타치바나[橘]	X	X	X

등장하는 경우에도 조선에서는 日本國王源으로 적었다(『태종실록』권21, 11년 1월 26일; 2월 22일).

23) 『조선왕조실록』 전체에서 ‘橘氏’ 표기는 성종대에 14건, 연산군대 1건으로 압도적으로 적으며, 그 15건 모두 오직 橘氏立石右京亮國長 1명을 가리키고 있다. 명종대에 들어와서야 氏라는 글자 없이 橘자만을 써 우지로 표기하는 사례(『명종실록』권10, 12년 12월 17일)가 등장할 정도다.

24) 『세종실록』권69, 17년 9월 8일.

25) 『태조실록』권12, 6년 8월 30일.

26) 『세조실록』권28, 8년 4월 24일.

27) 平道全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한문종, 『조선초기 대마도의 向化倭人 平道全: 대일 교섭 활동을 중심으로』, 『군사』141, 2016을 참조.

28) 가장 먼저 나오는 예시는 濃州太守平宗壽다(『태종실록』권30, 15년 7월 29일).

29) 平萬景의 사례가 대표적이다(『세종실록』권4, 원년 6월 1일).

타타라[多々良]	아손[朝臣]	오우치[大内]	大内殿, 大内多多良
----------	--------	---------	------------

앞서 강맹경과 후지 쿠로의 대화에서도 드러났듯이, 조선 측에서는 朝臣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거나 분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미나모토나 후지와라는 각각 源朝臣, 藤原朝臣의 표기를 써서 조선에 글을 올렸지만, 조선은 굳이 朝臣을 그대로 써서 회신하지는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타이라의 경우는 『조선왕조실록』 측 기록에서는 朝臣과 병렬되어 나온 사례가 조선 세조대 이전까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후 등장하는 平朝臣은 오직 소케[宗家]에서만 쓰는 특이한 사례로, 일반적인 ‘平氏’가 간단히 平朝臣을 칭하는 경우는 조선 측에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³⁰⁾ 오히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타타라를 쓰는 오우치 가가 朝臣을 쓰는 현상을 제법 목격할 수 있었다.³¹⁾

조선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신숙주(1417~1475)의 『海東諸國紀』(조선 성종 2, 1471)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해동제국기』에 담긴 내용은 상당히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해동제국기』 서술 자체에 대한 평가도 건조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³²⁾ 하지만 저자 신숙주로 대표할 수 있는 조선인들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왜구’를 경계하는 것이었으며, 포용책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다.³³⁾ 더 나아가, 『해동제국기』에 대한 이해는 후대로 접어들수록 조선의 필요에 맞추어 변모되어 갔다고 한다.³⁴⁾ 따라서 『해동제국기』 역시 자연스럽게 신숙주로 대표되는 조선인의 대일 인식이 담길 수밖에 없는 사료다. 『해동제국기』에서 성씨에 대해서는 그리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은연중에 그들의 ‘인식’이 드러난다.

신숙주는 일본국왕(쇼군)에 대해서는 源氏が 세습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으며, 매번 平氏로 대표되는 적을 진압하였다고 하였다.³⁵⁾ 그 외에 源氏は 오토모[大友] 가를 소개할 때, 이들은 源氏が 대대로 계승하는 자리라 소개한 대목에서 등장한다.³⁶⁾ 또한 각종 예물과 사신(위사)단은 源氏 혹은 藤原氏로 점철되어 있으며, 平氏は 단 4명뿐이다.³⁷⁾ 오히려 신숙주는 오우치[大内]의 多多良氏が 백제계를 자칭했다는 이유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였다.³⁸⁾ 반대로 묘지에 대한 언급은 상술한 ‘殿’자 수준에 머물러 있고, 카바네에 대해서는 봉서의 인용문에서만 朝臣자를 쓸 뿐이다.

이러한 이해는, 곧 조선인들에게 일본인들의 성씨 문제는 ‘源平藤橘’로 대표되는 지배권력 층 체계 분석이 아닌, 자신들과 소통하는 몇몇 성씨를 분할해서 그 존재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30) 물론 일본인들이 ‘平朝臣’을 쓰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해동제국기』 등 『조선왕조실록』이 아닌 기록에서는 平朝臣이 그대로 보이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31) <표 1>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多多良이 등장하는 기사 자체는 총 72건이며 연산군대 3건을 제외해도 69건이다. 사실상 오우치 가 1개 가문만의 기록이 平氏 대비 약 30% 수준일 정도로 주목을 받은 셈이다.

32) 『해동제국기』 관련 국내 연구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주로 조선을 중심으로 한 교류 시스템을 보여주는 책으로 알려져 있다(손승철, 『『해동제국기』를 통해 본 15세기 조선지식인의 동아시아관: 약탈의 시대에서 공존·공생의 시대로』, 『사람』41, 2012).

33) 조영빈·정두희, 「조선초기 지배층의 일본관: 신숙주의 『해동제국기』를 중심으로」, 『인문논총』9, 1981.

34) 허지은, 『『해동제국기』의 유통과 조·중·일 관계』, 『서강인문논총』52, 2019.

35) 申叔舟, 『海東諸國紀』, 『日本國紀』 天皇代序 後醍醐天皇; 『日本國紀』 國王代序.

36) 申叔舟, 『海東諸國紀』, 『日本國紀』 西海道九州, “大友殿, 源氏世襲所居.”

37) 『해동제국기』에 따르면 丹後州田伊佐津平朝臣門四郎家國, 石見州櫻井津土屋修理大夫平朝臣賢宗, 石見州北江津太守平朝臣吉久, 冷泉津布永臣平與三郎重家 4명이다. 츠시마 쪽은 제외하였다.

38) 『海東諸國紀』 『日本國紀』 山陽道八州, “大内殿, 多多良氏. (...) 日本人稱, 百濟王溫祚之後入日本, 初泊周防州之多多良浦, 因以爲. 至今八百餘年, 至持世二十三代. 世號大内殿.” 『新撰姓氏錄』에는 야마시로구니 지역 세력자들 중 任那계열로 多多良公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주 6)의 책 下, 34쪽; 원문 『新撰姓氏錄』卷25 山城國諸蕃 「任那」 多多良公). 그러나 오우치 가문과 어떠한 관계인지는 불명이다.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지 중에서도, 조선은 源平藤橘 중 源氏만을 세습 가능한 성의 개념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III. 조선의 對馬宗家 성씨 인식과 平氏

조선과 가장 교류가 활발했던 일본 지역 다이묘는 역시 츠시마였다. 츠시마를 다스리는 소케[宗家]는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대부분은 宗某로 성과 휘를 간단히 표기하는 형식을 취했다.

日本國 對馬島 都總管 宗貞茂가 사자를 보내어 방물과 말 6필을 바쳤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陪臣 刑部侍郎 宗貞茂는 政丞 각하에게 삼가 글을 올립니다. (...)”³⁹⁾

여기에 등장하는 소 사다시게[宗貞茂, ?~1418]는 1398년 처음 츠시마의 當主가 되어, 이듬해인 1399년 조선과 통교를 시작하였다. 본 사료는 그 첫 번째 예시로 봉서의 내용이 실록에 적혀 있다. 여기에서 조선은 사다시게가 對馬島 都總管이라고 기록했는데, 봉서에 적힌 刑部侍郎이라는 관명과는 별개의 명칭이다. 1415년(조선 태종 15)이 될 때까지 宗家 중에서는 오직 사다시게만이 조선과 통교하였으며, 1418년(조선 태종 18) 사망 소식이 조선에 알려지자 조선이 특별히 致祭를 하고 賻儀를 밝혔다.⁴⁰⁾ 그만큼 사다시게라는 존재는 조선에게는 특별하였다.

여기서 츠시마 소케[宗家]의 우지와 카바네 및 묘지로 쓰는 글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츠시마는 본래 코레무네[惟宗] 우지를 쓰던 가문으로, 鎌倉幕府 때 츠시마 지토가와리[地頭代]에 임명되어 세력을 키워 나갔다. 당시 섬 안 神社의 棟札 등에서는 인명 표기를 惟宗朝臣宗某라 했다고 하는데,⁴¹⁾ 이 표기에 따르면 우지인 코레무네, 카바네인 아손, 묘지인 소가 모두 드러난다. 아울러 묘지인 ‘宗’는 지토가와리(무가)직을 본 율령관직과 구별하기 위해 부른 명칭으로 출발한 것이다.⁴²⁾ 그러나 조선 측 기록에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약 100건에 달하는 사다시게에 대한 기술 중에서, 그를 코레무네로 부르는 예시는 찾을 수 없었다. 1415년 처음으로 宗家 중에서 사다시게가 아닌 인물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데,⁴³⁾ 이 역시도 宗某의 형태를 취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단 한 차례 ‘唯宗’이라는 글자가 실록에 보일 뿐이며,⁴⁴⁾ 조선이 답서를 쓸 때는 宗公이라는 글자를 썼다.⁴⁵⁾ 따라서 우지인 源자나 藤原자를

39) 『정종실록』권2, 1년 7월 1일, “日本國對馬島都總管宗貞茂, 遣使來獻方物及馬六匹. 其書曰, 陪臣刑部侍郎宗貞茂拜書政丞閣下(...)”

40) 『태종실록』권35, 18년 4월 24일.

41) 長節子, 『中世日朝關係と對馬』, 東京: 吉川弘文館, 1987, 11頁.

42) 주 41)의 책, 10頁. 설명주에 따르면 유사한 사례가 오우치[大内]-타타라[多々良]라 한다.

43) 『태종실록』권29, 15년 5월 26일, “日本西都京兆尹宗貞澄.”

44) 『태종실록』권31, 16년 5월 8일, “對馬州唯宗信濃守滿茂, 使人獻禮物, 求般若經.” 이에 대해 오사 세츠코 [長節子]는 宗家가 惟宗을 칭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조선 측에서 ‘이미 정해진 듯 붙은 惟宗을 생략하는 것이 예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주 41)의 책, 16頁). 그러나 사례 자체도 단 1건뿐인데다, 『조선왕조실록』에서 源氏, 藤氏 등의 표기와 마찬가지로 宗氏라는 표현도 몇 차례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코레무네 자만을 ‘宗’자로 줄여서 썼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설령 일본 측 원 서한에 ‘惟(唯)宗’이 있었다고 할 지라도, 실록에서 답서를 기록할 때는 가능한 한 원 글자를 그대로 따르는데도 사례가 없어 증명이 어렵다. 따라서 조선인들이 惟(唯)宗 2자를 임의로 축약했다기보다는, 고유명사인 성으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기록이 적었다고 해석하는 쪽이 옳을 것이다.

칭한 다른 일반적인 ‘통교자’들과는 달리, 宗家は 처음부터 묘지 宗자로 조선에 알려졌다.

한편 츠시마는 1378년(永和 4) 즈음에는 슈고[守護] 급 다이묘로 임명되었다. 이들은 그 후에도 쇼니[少弐] 가의 휘하로 활동하면서 오우치[大内]와 대립하며 큐슈 본토에도 영향력을 끼쳤다. 1450년 이후 쇼니 가문이 약체화되어 몰락하자, 宗家は 1478년(文明 10) 신흥 가문인 오토모[大友]와 결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츠시마는 우지를 바꾸어 가문의 격을 더 높이고자 하였는데, 우선 도주 직을 맡은 가게를 중심으로 平氏를 칭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내부에서는 적어도 소 사다모리[宗貞盛, 1385~1452]에 대한 표기부터 平氏를 칭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宝徳 元年(1449) 이후를 기점으로 볼 수 있다.⁴⁶⁾

조선 측에 츠시마 宗家が 平氏를 처음 사용한 시기는 조금 시간이 흘러, 1461년(조선 세조 7) 처음 관련 기사가 보인다.⁴⁷⁾ 츠시마 宗家 중에서 가장 먼저 平氏를 사용한 인물은 소 사다히데[宗貞秀]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남은 기록들은 대부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복 기사인데, 특기할 점으로 이전까지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방식을 처음 사용하였다. 아손[朝臣] 자를 타이라[平]에 붙여서 쓰는 ‘타이라노 아손[平朝臣]’에 소[宗]까지 넣은 것이다. 이미 미나모토노 아손[源朝臣], 후지와라 아손[藤原朝臣] 자가 세종 연간 실록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질적이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平朝臣 총 115건 중, 肥前州小城千葉介平朝臣元胤(7건)과 關西路安藝州小早川美作守平朝臣持平(2건)을 제외한 모든 기록이 츠시마 宗家を 지칭하는 표현이다. 그 중에서 平朝臣이 宗 바로 앞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⁴⁸⁾ 이는 ‘타이라노 아손’이 ‘소’와 구별되는 명칭임을 츠시마 측에서 밝힌 것이기도 하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 平朝臣 자를 집어넣은 서계 기록이 직접 인용된 경우는 조금 늦어 조선 성종대에 처음 보인다.⁴⁹⁾

하지만 조선은 平朝臣이라는 글자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츠시마 측 사람을 宗氏로 인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僉知中樞院事 宋處儉 日本國通信使로, 行護軍 李從實을 副使로, 宗簿寺注簿 李觀을 書狀官으로 하여, 禮物를 가지고 秀彌와 같이 모두 갔다. (...) 禮曹判書 洪允成이 日本國 大內多多良公 足下에게 글을 드립니다. (...) 禮曹參判 黃孝源이 日本國 大和守 足下에게 글을 드립니다. (...) 禮曹判書 洪允成이 日本國 畠山 修理大夫 源公 足下에게 글을 드립니다. (...) 禮曹判 書洪允成이 日本國 左武衛 源公足下에게 글을 드립니다. (중략) 禮曹參議 徐居正이 對馬州太守 宗公 足下에게 글을 드립니다. (후략)⁵⁰⁾

이 기사는 1459년(조선 세조 5년) 10월 5일, 조선 조정에서 宋處儉(?~1459?)을 정사로 한 통신사를 파견할 때 함께 들려 보냈던 서한의 내용들이 적혀 있다. 각 내용은 간단한 문안인사와 예물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조선 예조에서 수신인을 지칭하는 방법이다.

45) 『세종실록』권23, 6년 1월 28일 등. 『성종실록』까지 총 10건 확인이 가능하다.

46) 주 41)의 책, 11~16頁.

47) 『세조실록』권24, 7년 4월 17일, “日本國對馬州平朝臣宗彦九郎貞秀, 遣人來獻土物.”

48) 『세조실록』권40, 12년 10월 5일, “仁郡宗信濃守平朝臣盛家.”; 『성종실록』권292, 25년 7월 27일, “對馬州平朝臣刑部少輔宗貞秀.”; 『연산군일기』권 3, 1년 2월 17일, “對馬州平朝臣刑部小輔宗貞秀.”

49) 『성종실록』권26, 4년 1월 20일.

50) 『세조실록』권17, 5년 8월 23일, “以僉知中樞院事宋處儉爲日本國通信使, 行護軍李從實爲副, 宗簿注簿李觀爲書狀官, 齎禮物, 與秀彌偕往. (...) 禮曹判書洪允成奉書日本國大內多多良公足下, (...) 禮曹參判黃孝源奉書日本國大和守足下, (...) 禮曹判書洪允成奉書日本國 畠山修理大夫源公足下, (...), 禮曹判書洪允成奉書日本國 左武衛源公足下, (...) 禮曹參議徐居正奉書對馬州太守宗公足下, (...)”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오우치 가는 묘지와 우지를 함께 써서 大內多多良公이라 밝혔다. 인명이 없는 야마토노카미[大和守] 앞으로는 무가의 직함만 써서 보냈고, 조정의 관위가 있는 자에게는 畠山 修理大夫 源公이라 하여 묘지(혹은 소령지)와 관직 및 우지를 써서 보냈다. 그런데 츠시마는 우지에 해당하는 자리에 宗을 넣어 宗公이라 칭했다.

이 시기는 아직 츠시마가 조선에 平朝臣을 칭하기 전이기 때문에,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宗公이라 부른 예시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츠시마 宗家が 平朝臣을 연호한 이후인 조선 성종대에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선 성종 1년(1470)에 예조에서 보내는 조선의 회답서가 실려 있다. 첫 번째는 禮曹參議 金永濡가 보내는 글인데, 그에는 對馬州太守宗公足下에게 글을 올린다고 적혀 있었다.⁵¹⁾ 또한 당시 츠시마 당주였던 소 사다쿠니(宗貞國, 1423~1495)에게 보내는 답서 명의로 글이 한 건 더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禮曹參議 金永濡(1418~1494)가 宗公足下에게 다시 올린다고 기록하고 있다.⁵²⁾

전체 비중으로 보아도, 『조선왕조실록』에서 宗家が 平氏를 쓰는 사례는 상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 표는 그를 분석한 것이다.

<표 3> 『조선왕조실록』(세조~명종)에 등장하는 平朝臣과 宗家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명종	합계
平朝臣宗 표기	37	1	17	50	1	4	110
對馬宗家 기록 전체	207	20	564	53	52	11	907
宗家が 아닌 平朝臣	6	0	0	3	0	0	9

※ 수치 책정 기준은 <표 1>과 동일하다. 조선 인종기(1544~1555)는 해당 기록이 없어 제외하였다.

츠시마는 조선 세조 7년에 처음으로 平朝臣 글자를 써서 조선에 家格의 상승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平朝臣宗자가 드러나는 시기는 세조대 중 마지막 6~7년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전인 조선 세조 7년까지의 기록이 총 99건이므로, 츠시마로서는 1460년대에 平朝臣자를 상당히 자주 조선에 드러낸 셈이다. 심지어 平氏 중에서 츠시마의 등장 비율만 절반을 훌쩍 넘긴다. 그런데 조선 성종대 기록의 비율을 살펴보면, 宗家に 平朝臣을 붙여주는 비율은 3%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물론 조선 전기를 통틀어, 『조선왕조실록』을 기준으로 츠시마 관할 밖에서 平자만을 쓰는 가문은 코바야카와[小早川], 元胤뿐이었으며 그 빈도도 극히 적다. 심지어 『조선왕조실록』에는 연산군대까지 줄기차게 平朝臣宗이 등장하였다. 그럼에도 그 시기 조선이 츠시마가 平朝臣자를 쓰는 가문이라고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은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1471년(조선 성종 2) 당시 조선의 대일인식 기초를 보여주는 『해동제국기』에서도, 츠시마는 平氏가 아닌 宗氏가 다스리는 지역이라고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였다.⁵³⁾

시간이 한참 흘러, 1540년(조선 중종 35)이 되어서야 平朝臣자가 오랜만에 『조선왕조실록』

51) 『성종실록』권7, 1년 9월 1일.

52) 『성종실록』권7, 1년 9월 29일.

53) 『海東諸國紀』 「日本國紀」 對馬島, “宗氏世爲島主.” 신숙주는 해당 문헌의 서류 끝에 츠시마 측 일본인들의 봉서에서는 平朝臣宗을 쓰는 예시가 있음을 보여주기는 했다. 하지만, 본문 전체에 걸쳐 소 사다쿠니가 중개한 사신단을 언급하면서 平朝臣을 그쪽에는 쓰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조선왕조실록』과 마찬가지로, 신숙주는 츠시마의 통치자를 源氏·多多良氏와 병렬상의 宗氏로 본 것이다.

에 등장한다.

예조가 啓로 말하였다. “對島道 倭人에게 연회를 베풀 적에 조그만 통을 가져와 올렸습니다. 왜인이 물러난 후에 열어 보니, 서계 아래에 또 圖書가 3장이 있었습니다. (...)” (對馬島の 서계에서 말하였다. “對馬州太守 平朝臣宗盛長은, 머리 숙여 짧은 글을 朝鮮國 禮曹 三大人 座下에 올립니다. (...) 天文[天文] 9年 9月 平朝臣宗盛長은 머리 숙여 백 번 절합니다.” 이에 대해 답서에서 말하였다. “朝鮮國 禮曹參議 尹思翼은 對馬州太守 平朝臣宗公足下에게 답해 올립니다.(...)” 大提學 金安國이 지었다.)⁵⁴⁾

三浦倭亂(1510)과 壬申約條(1512)를 거쳐,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역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오히려 왜구의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조선 역시 왜구의 등장으로 인한 倭變을 겪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교역 재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룬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위와 같이 平朝臣이라는 격을 갖춘 글은 거의 없었다. 위 글의 내용 자체도 피로인 송환이나 쌍방 요구사항 등 일반적인 면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서계에 平朝臣宗이 들어가 있으며, 조선 예조에서 내놓은 공식 답서에도 이에 맞춰 平朝臣宗公이라 답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사례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일전에 平朝臣을 츠시마가 일방적으로 쓰는 것처럼 기술한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후에 1555년(조선 명종 10)과 1556년(조선 명종 11)에도 조선은 이러한 유형의 답서를 두 차례 더 보내는데,⁵⁵⁾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조선 측의 공식 문서에서 ‘平朝臣’이 츠시마 소케의 인명에 붙을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平朝臣과 관련된 기록은 1556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위 문서군이 오간 이듬해인 1557년(조선 명종 12)에 맺은 丁巳約條로, 조선과 츠시마의 교역은 부산 1항·연 30척으로 제한되었다. 그에 따라, 조선이 ‘平朝臣’이나 ‘平氏’를 두고 논의하거나 받아들일 만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채 교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심지어 조선 선조대(1567~1608)는 일본 내부 정세의 변화로 인해 양국의 관계가 급변하였다. 그 과정에서 츠시마의 平氏は 본래의 의미 전달은 물론이거니와, 平氏를 100년 넘게 사용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조선에서는 잊혀지고 말았다.

54) 『중종실록』권49, 35년 10월 23일, “禮曹啓曰, 對島道倭人宴享時, 持納小筒, 倭人去後開見, 則書契之下, 又有圖書三張. (...) (對馬島書契曰, 對馬州太守平朝臣宗盛長頓首拜白, 謹上短簡朝鮮國禮曹三大人鈞坐下. (...) 天文九年九月日, 平朝臣宗盛長, 頓首百拜. 其答書曰. 朝鮮國禮曹參議尹思翼, 奉復對馬州太守平朝臣宗公足下. (...) 大提學金安國製.)”

55) 『명종실록』권18, 10년 3월 20일; 『명종실록』권20, 11년 5월 8일.

IV. 나오며

조선의 다자외교 상대였던 일본 측 세력가들은 조선에 글과 예물을 정기적으로 올렸다. 공식 문서의 성격을 한 글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자신의 인명을 어느 정도 격을 갖추어 적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공적인 무대에서 보이는 성씨가 『조선왕조실록』 기록에도 남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이미 일본의 성씨는 우지가 源平藤橘 4개, 카바네가 朝臣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상태였다. 따라서 그들이 조선에 보내는 글에서 카바네 朝臣은 비정기적으로 등장하며, 성씨 부분에 주로 4개 우지 중 하나를 적었다.

일본에서는 무사 집단의 특성상 源氏도 平氏도 상당한 위용을 뽐내는 집단이었다. 조선 측에는 源氏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조선인들도 日本國王(=征夷大將軍)이나 大友家が 源氏를 세습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平氏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정보가 많지 않았다. 등장 빈도도 훨씬 적을뿐더러, 주로 언급되는 인물들도 대개 向化人·受職人이었다. 적어도 平氏が 중국이나 조선이 쓰는 성의 자리에 가는 글자라고 인지했음은 분명하지만, 平氏에 대한 인상은 두 차례 源氏에 의해 축출된 적이 있는 존재였다는 것뿐이었다. 한편 조선과 가장 많이 교류하였던 對馬島主는, 조선-일본 간 교류가 가장 활발한 시기인 세조~연산군대에 平朝臣을 연달아 사용하여 平氏임을 어필하였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이들을 ‘宗氏’로 인지하였으며, 平朝臣이라는 글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조선이 ‘平朝臣’의 의미에 질문을 제기한 시기는, 에도 바쿠후를 거쳐 메이지 일본 당시 츠시마 측 서계에 등장한 平朝臣宗이었다.⁵⁶⁾ 그렇게 平氏は 조선인들에게는 존재하는 하지만 연상할 만한 이미지는 따로 없는, ‘비어 있는’ 영역이었다.

현재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임진왜란과 관련이 없는 일본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임진왜란 이후 ‘히데요시’로 대표되는 平秀吉과 관련된 기록, 혹은 平氏之國이 平氏の 주류를 차지하고 말았다. 일본 측에서도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카바네인 朝臣을 굳이 조선에 쓰지 않았고, 오히려 平 1자만을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체계는 임진왜란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15~16세기 조선-일본 간 성씨의 활용을 이해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日本國王이라는 명백한 선례가 있는 源氏에 비해, 平氏は 동렬의 우지임에도 그 자체에 대한 인식 개념화는 조선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 ‘평수길’ 일당에게 씌워진 平氏의 이미지가 조선 지식인들에게 빠르게 침식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56) 이에 대한 논쟁은 현명철, 『근대 변혁기 한일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2021, 189~191쪽; 248~250쪽을 참조.

참 고 문 헌

1차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明實錄』
申叔舟, 『海東諸國紀』
『新撰姓氏錄』

연구저서 및 논문

- 박수철, 「血統과 器量으로 본 16세기 일본 ‘高名’ 사회」, 제42회 동양사학회 동계연구토론회 자료집, 2023.
- 佐伯有清 著, 연민수 역주, 『新撰姓氏錄』, 동북아역사재단, 2020.
- 李基東, 「新羅의 骨品制度와 日本의 氏姓制度」, 『역사학보』94·95, 1982.
- 이케가미 료타 著, 이재경 역, 『도해 전국무장』, AK Trivia Book, 2011.
- 손승철, 「『해동제국기』를 통해 본 15세기 조선지식인의 동아시아관: 약탈의 시대에서 공존·공생의 시대로」, 『사람』41, 2012.
- 조영빈·정두희, 「조선초기 지배층의 일본관: 신숙주의 『해동제국기』를 중심으로」, 『인문논총』9, 1981.
- 한문종, 『조선전기 향화·수직 왜인 연구』, 국학자료원, 2001.
- , 「조선초기 대마도의 向化倭人 平道全: 대일 교섭 활동을 중심으로」, 『군사』141, 2016.
- 허지은, 「『해동제국기』의 유통과 조·중·일 관계」, 『서강인문논총』52, 2019.
- 현명철, 『근대 변혁기 한일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2021.
- 홍찬숙, 「유럽에서 성(surname)과 가족성(family name)의 출현 및 그 의미: 기혼여성의 지위 변화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30(2), 2020
- 阿部武彦, 『氏姓』, 東京: 至文堂, 1976.
- 長節子, 『中世日朝關係と對馬』, 東京: 吉川弘文館, 1987.
- 木村拓, 『朝鮮王朝の侯国的立場と外交』, 東京: 汲古書院, 2021.
- 黒田基木, 『羽柴を名乗った人々』, 東京: 角川選書, 2016.

【토론문】

「조선 전기 조선 조정의 일본 지배층 이해 -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人名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해진(동국대학교)

본 발표는 『조선왕조실록』의 조선 전기 기사에 등장하는 일본인 인명의 용례에 주목하여 그 출현 배경과 성격을 고찰한 성과이다. 그동안 쓰시마 소(宗) 가문의 도내 주도권 장악과정을 조선 외교와의 관련 속에서 밝히고자 한 선행연구들이 축적된 가운데 소 가문이 다이라(平)라는 우지(氏)를 칭하게 된 경위가 검토되어왔으나, 『조선왕조실록』의 표기 사례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조선 측의 입장까지도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덧붙여 조선 전기의 방대한 사료를 망라한 사례연구이기에, 향후 연구 발전에 큰 자극을 주고 있다.

토론자는 근세(조선 후기) 한일관계사 연구자이기에 일본의 중세(무로마치 시대)에 해당하는 조선 전기의 한일관계에 관해서는 단편적인 지식밖에 갖추고 있지 못하나, 토론의 소임을 맡게 되어 발표문을 읽고 추가로 다른 참고문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발표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하에는 본 발표문을 읽고 난 뒤 느낀 감상을 중심으로 발표자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소 가문이 조선 외교에서 平氏를 사용하게 된 일본 국내적 배경

본 발표 3장에서 주로 다룬 소 가문의 平氏 사용은 오사 세쓰코(長節子)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일본 국내적 상황에서 그 주요 원인을 찾아야 한다. 가령 다자이후(복규슈)에 세력을 지닌 쇼니씨의 쇠퇴로 소 가문이 더 이상 惟宗가 표방하는 쇼니씨와의 연관(다자이후 재청관인의 후예로서)을 강조할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이나, 소 가문이 다이라노 도모모리(平知盛)의 후손임을 자부하기 위하여 平氏를 자칭하고 이를 통해 시라카와 천황(白河天皇)의 후예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된 사실(야사에 따르면 도모모리의 조부인 다다모리[忠盛]가 임신한 시라카와 천황의 애첩을 아내로 얻어 아들인 기요모리(清盛)를 낳았다고 한다) 등, 조선 외교상에서의 용례 제시에 앞서 (선행연구의 설명을 인용하는 방식으로라도) 당시 일본의 국내 정세 속에서 소 가문이 平氏를 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한 발표자가 10쪽에서 제시한 성종 1년(1470)의 용례(소 가문에 보내는 조선 예조의 회답서에 ‘宗公足下’라고 기입)에 관해서도 오사의 분석 결과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사의 설명에 따르면 1469년 이후 얼마간은 일본 내에서도 소 가문이 平氏가 아니라 惟宗를 다시금 칭하게 된 시기였다고 한다. 그 배경은 오년의 난 발발로 인하여 오우치 주력이 규슈에서 이탈한 가운데, 소 가문이 쇼니씨를 비호하여 규슈 북부를 탈환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즉 복규슈 점령의 명분 확보를 위해서라도 쇼니씨에서 비롯되는 과거의 유서(다자이후 재청관인으로서의 惟宗)를 복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平氏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시기였다고 한다. 즉 해당 사례에서 소 가문의 외교문서에 대한 답신이 平氏가 아니라 宗公를 칭한 것(아마도 조선은 소 가문이 보내온 외교문서의 수신자명 그대로 답신자명을 적었을 것임)은 일반적·보편적인 사례가 아닌 특수한 사례에 해당하기에 논지 전개를 위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쇼니씨와 내분이 생긴 소 가문은

1473년에 바로 平朝臣을 칭하는 외교문서를 조선에 보내왔다.

2. 오사 세쓰코의 선행연구에 대한 해석

주석 44)에서 발표자는 오사의 연구가 『조선왕조실록』에서 惟宗 두 글자를 宗 1글자로 임의로 축약했다고 해석하였다고 이해한 듯 보인다. 그러나 오사의 서술(きまりきったようにっている惟宗姓を省略するのが例になっていた)은 ‘틀에 박힌 것처럼 붙어 있는(=겉치레로 보이는)’ 惟宗姓을 생략한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즉 오사가 이야기한 바는 2글자를 1글자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惟宗은 宗이기에 평소 써오던 대로 宗라고 약식 기입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발표자는 9쪽에서 “宗家は 1478년(文明10) 신흥 가문인 오토모[大友]와 결탁하였다”라고 서술하였는데, 오사의 연구에 따르면 소 가문이 결탁한 상대는 오토모가 아니라 그동안 소 가문이 쇼니씨와 같은 편이 되어 계속 적대해왔던 ‘오우치’(+무로마치 쇼군)였다.

마지막으로 오사는 쓰시마 내에서 소 가문이 平氏를 칭한 첫 사례로 寶德 원년(1449) 사례를 들었다. 즉 오사가 해당 사료를 제시한 이유는 寶德 원년(1449) 시점은 이미 平氏 사용이 시작된 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인데, 발표자의 해석은 해당 연도 ‘이후’를 기점으로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소 가문이 惟宗을 칭한 그 이전 사례로서 오사가 제시한 것은 1445년의 문서이기에, 정확히는 ‘1445년에서 1449년 사이를 기점으로’ 하였다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

3. 『조선왕조실록』의 용례에 宗氏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

조선과의 통교 개시 이래로 소 가문은 외교 문서상에서 宗氏를 칭해왔다. 따라서 조선에게는 이미 宗氏 쪽이 익숙한 명칭으로 정착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교문서의 본문을 직접 인용하는 상황(소 가문 측의 발신자명 혹은 그에 대한 답신에 적힌 인명, 답신자명은 먼저 보내온 서신의 발신자명을 그대로 적는 것이 관행)이 아니라면, 관행상 계속 宗氏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인명 용례의 분석은 조선 측의 인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의 표기 방법에 관한 문제로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덧붙여 발표자가 平朝臣의 마지막 용례로서 제시한 11쪽의 1556년 기사는 소 모리나가(宗盛長) 관계 내용인데, 모리나가 또한 다른 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宗氏를 칭한 사례가 많다. 그런데 모리나가가 체결한 丁巳約條(1557)를 끝으로 쓰시마와 조선의 통교는 30여 년 동안 단절에 이른다. 소 가문과의 교섭은 1589년에 재개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소 요시토시(宗義智)는 『조선왕조실록』 속에서 平義智로 표기되었으며 그 후의 용례는 압도적으로 宗氏보다 平氏 쪽이 많다. 즉 임진왜란 시기에도 용례의 축적으로 인한 인명 표기의 관행화가 이루어졌으며, 과거와는 반대로 이때는 宗氏가 아니라 平氏 쪽으로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소 가문이 고레무네를 칭하지 않은 이유는?

소 가문이 조선에 보내는 외교문서에서 다자이후 재청관인(在廳官人)의 후예(少弐씨와 관련)임을 의미하는 고레무네(惟宗)(울령관제적 성격)가 아니라 쓰시마의 지토다이(地頭代)로서 칭한 소(宗)(무가적 성격)를 칭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점을 규명한다면 소 가문이 조선 외교를 어떠한 성격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참조 사항) 결론의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카바네인 朝臣을 굳이 조선에 쓰지 않았고”

임진왜란 이후 소 가문 측의 서계를 살펴보면, 단어 간의 전후 이동은 있지만 대체로 발신자명을 ‘日本國(臣)拾遺對馬州太守平XX’라고 기입하였다. 즉 실질적인 의의를 상실한 가바네

를 대체하여 역직명인 습유(拾遺, 侍從의 당명)를 적은 것이 아닐까.

6. (오류 수정) 주석 16)의 본문에는 각각 ‘宗像社務氏經’(『실록』, 태종 12년 4월 28일)과 ‘宗像社務氏顯’(『실록』, 태종 15년 4월 22일)의 명칭이 등장한다고 하였으나, 해당 기사와 실제 용례는 ‘氏’가 기재되지 않은 ‘宗像社務經’ ‘宗像社務顯’이다. 한편 『실록』 세종 6년 11월 13일의 기사에 ‘宗像社務氏經’ 용례가 등장하는데, 앞의 사례로 보았을 때 여기와 주석 15) 사료에 기입된 ‘氏’는 조선 측이 성과 이름을 끌어 읽기 위해 일부러 삽입한 글자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발표자는 쓰시마의 受職人 후지 구로(藤九郎)가 “氏와 經을 끌어서 해석하였다”라고 설명하였는데, 해당 사료 속에서 그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7. 일본사의 용어 문제

- 1쪽 ‘무가 귀족(다이묘)’ : 일반적으로 ‘귀족’이라는 용어는 공가(公家) 즉 조정 귀족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생각된다. ‘무가 영주’라는 표현이 어떨까 한다.
- 8쪽 ‘슈고[守護] 급 다이묘’ : 일반적으로 무로마치 시대 연구에서는 ‘슈고 다이묘’의 약칭으로서 ‘다이묘’를 사용한다. 즉 ‘슈고 급 다이묘’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기에, “소 가문은 1378년 즈음에는 쓰시마의 슈고로 임명되었다”라는 서술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8. 서론의 전개 방식에 관하여

서론의 구성을 개괄하자면, 먼저 외교 문서상의 호칭에 관한 문제 제기부터 시작하여 일본의 우지(氏)와 가바네(姓), 그리고 묘지(名字)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 이어서 『조선왕조실록』에 조선과 외교를 수행한 일본인들의 인명 표기 사례가 두루 발견됨을 지적한 뒤, 해당 사례들을 통해 “조선이 일본인 지배계층이 사용하는 姓氏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다만 본 논문의 취지가 서론 끝부분에서야 드러나고 있기에, 서론의 가장 첫 부분에서 본 논문의 취지를 두괄식으로 먼저 밝힌 뒤, 이어서 본 논문의 검토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과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제시하는 편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한층 명확히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9. 소 가문의 조선 통교에 관한 최신 연구성과 반영 필요

오사의 연구(기존의 논문을 모아 1987년에 출판) 이후에도 많지는 않지만 중세 조일관계사를 다룬 연구들이 간행되었다. 가령 2007년에 출판된 아라키 가즈노리(荒木和憲)의 연구(『中世対馬宗氏領国と朝鮮』, 山川出版社, 2007)는 쓰시마 내 소 가문의 권력 장악과정을 조선 외교와의 관련 속에서 다룬 최근의 대표적인 성과이다. 본 발표 내용과도 적잖은 관련이 있기에, 향후 아라키 등의 연구성과도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0. (보완 사항) 본 발표는 사례연구로서 본문에 간단히 사례를 언급하고 주석에 해당 사례의 출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전공자 이외에는 사료의 문맥 및 등장인물들의 정체를 이해하는 데에 다소 곤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원고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주석으로 달아둔 실록 기사들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분석 및 등장인물의 본명 및 사절 파견 경위 등을 밝혀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추가로 각 기사를 다룬 선행연구가 있다면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3발표

근대 일본의 여성노동과 여성노동자 ‘보호’

발표 : 김경옥(한림대학교)

토론 : 박미아(서강대학교)

근대 일본의 여성노동과 여성노동자 ‘보호’

김경옥(한림대 일본학연구소)

《목차》

1. 일본의 근대화와 여성노동자 보호의 탄생
 - 1) 공장법 제정과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직공 규정
 - 2) 공장법 시행과 공장법 밖의 여성노동자
2. 산업합리화와 노동강화 속 흔들리는 여성노동자 보호
 - 1) 개정공장법의 시행과 여성노동자 보호
 - 2) 경제위기 속 노동강화와 여성노동자의 저항
3. 전사회정책과 노동정책 속 교착하는 여성노동자 보호
 - 1) 전시기 사회정책의 본질과 노동력 보전
 - 2) 노동정책과 인구정책의 양립 속 모순되는 여성노동자 역할
4. 부인공장감독관의 활동과 여성노동자 보호의 변용
 - 1) 부인공장감독관 다니노 세쓰의 활동과 산업보국회
 - 2) 공장법전시특례와 여성노동자 보호의 충돌
5. 점령기 여성노동자 보호의 재생산
 - 1) 신시대의 자유와 여성해방
 - 2) 부인소년국의 활동과 여성노동자 보호
6. 결론

들어가기

본 연구는 근대 일본의 여성노동정책을 중심으로 ‘보호’라는 명분이 여성노동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함으로써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이면에 감춰진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기적 배경은 1911년 공장법의 제정부부터 1931년 만주사변을 비롯해 1937년부터 이어지는 아시아태평양전쟁, 패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점령기까지의 여성노동정책 전개과정에서의 여성노동자 보호에 대한 고찰이다. 특히, 여성노동자에 대한 동원과 규제의 상관성에 주목함으로써 전전에서 전후로 이어지는 모성보호 이데올로기 속에 감춰진 보호의 실제적 의미를 밝히고 이를 통해 근대 일본이 본질적으로 추구한 여성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근대 일본의 산업전사로서 부국강병을 담당한 여성노동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산업혁명기에 공장노동자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던 여성노동자는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병고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견여야만 했다. 당시의 일본은 부국강병의 슬로건 아래 산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취했지만, 노동에 관계하는 법령은 1911년에 공포된 공장법뿐이었다. 공장법은 일본 노동법의 시작으로 일명 ‘노동자보호입법’으로도 불리며 공장의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시 15인 이상 직공을 사용하는 공장’만을 대상으로 했고 대

다수의 여성노동자가 속한 섬유산업에서는 심야 작업 금지 규정이 개정공장법 시행 3년 후인 1929년에야 실시되어 섬유산업의 여성노동자는 여전히 주야 열악한 노동 환경하에 있었다.

당시 공장법을 제정한 농상공부는 연소자와 여성노동자가 수동적이고 의지가 박약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므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보호직공’으로 규정했다. 그 결과, 여성은 가부장제적 가치관 아래에서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보호되어야 하는 저임금 노동력의 급원이 되었다.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의 여파로 산업합리화가 진행되어 섬유산업의 숙련된 여성노동자는 보호의 명목 아래 해고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진주만 공격 등의 연이은 전쟁의 급증하는 군수물자의 생산력 확충을 위해 해고된 여성노동자를 전선의 남성을 대신한 대체노동력으로 다시 동원했다.

공장법은 1947년에 노동기준법이 시행되며 폐지되었지만, 보호직공으로 규정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규정과 개념은 전후 포스트제국을 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의식을 좌우하고 인식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를 중심으로 근대 일본의 여성노동정책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국가의 목적에 따라 여성노동자를 동원하기 위해 변용하는 보호라는 명분 속에 감춰진 동원과 규제의 상관성과 그 실체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장법이 제정된 1911년 이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여성노동자가 저임금 노동력으로서 어떻게 동원되고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 보호라는 명분이 어떻게 여성노동자의 동원과 규제의 기제로 작용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국가의 목적에 따라 억압과 구속으로 변용하는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호 속에 내포된 함의, 즉 그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질 때 전후 일본 여성의 직장에서의 지위, 노동환경, 모성보호 등 현대 일본 사회와 젠더 환경 등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근대화와 여성노동자와 관련한 연구는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이항대립적 관계 속에서 열악한 노동환경 속의 여성노동자에 주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¹⁾ 자본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동시에 국가와 노동력의 관계에 대한 주목도 필요할 것이다. 근대 일본의 노동자 보호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오코우치 가즈오(大河内一男)의 연구다. 일본은 원활한 전쟁 수행을 위해 총력전체제가 진행된 1938년 후생성을 설치하고, 인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개선을 꾀하며 사회정책, 의료정책 등을 진행했다.²⁾ 오코우치 가즈오는 노동력이라는 관점에서 전전 일본이 실시한 후생성 설치와 사회정책의 핵심이 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력 보전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일본의 근대화와 여성노동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937년에서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의 총력전체제기 여성노무동원에 관한 연구이다.³⁾ 이 시기의 여성노무동원 연구는 전시 동원정책을 중심으로 한 동원 과정과 사례연구⁴⁾ 혹은 후생정책⁵⁾ 등에 집중된 특징을 볼 수 있다.

1) 堀サチ子, 「十五年戦争における女子労働政策と既婚女子労働者」, 東京歴史科学研究会婦人運動史部会 編, 『女と戦争—戦争は女の生活をどう変えたか』, 昭和出版, 1991; 西成田豊, 『近代日本労働史—労働力編成の論理と実証』, 有斐閣, 2007; ジャネット・ハンター 著, 阿部武司・谷本雅之 監訳, 『日本の工業化と女性労働—戦前期の繊維産業』, 有斐閣, 2008; 榎一江, 『近代製糸業の雇用と経営』, 吉川弘文館, 2008.

2) 荻野美穂, 『「家族計画」への道—近代日本の生殖をめぐる政治』, 岩波書店, 2008年; 「人口政策と家族—国のために産むことと産まぬこと」, 『アジア・太平洋戦争3—動員・抵抗・翼賛』 岩波書店, 2006年. 김경옥, 「총력전체제기의 일본의 인구정책—여성의 역할과 차세대상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37, 일본사학회, 2013.

3) 佐藤千登勢, 『軍需産業と女性労働：第二次世界大戦下の日米比較』, 彩流社, 2003年. 이외에도 일본의 근대화와 여성에서 부인참정권운동 관련 연구도 많은 진전이 보인다. 하지만 부인참정권운동 연구는 지식인 여성이라는 일부 개인의 사상과 주체적 활동에 관한 접근에 머물러 있어, 일반 여성노동자는 비가시적 존재에 그치고 있다. 김경옥, 「총력전체제기의 일본의 여성노동정책과 전시노무 관리에 관한 연구」, 『일본역사연구』 34, 일본사학회, 2011.

본 연구는 오코우치 가즈오의 연구를 토대로 노동력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에 접근하고자 한다. 근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패전에 이르기까지 약 50년에 걸친 연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열강의 대열에 서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전장의 남성을 대신해 군수물자 생산에 힘쓸 여성노동력이었다. 근대 일본의 여성노동자는 부국강병의 일선에서 산업전사로 기대되었고, 전시 기에는 남성을 대신해 후방의 공장에서 군수품 생산에 헌신하도록 기대되었으며, 패전 이후 점령기에는 제국의 영역에서 일국의 일본으로 귀환하는 수많은 인양자(引揚者)들의 물결 속에 전통적 여성의 영역이었던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 요구되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정책 전개과정을 역사학적 접근을 통해 시계열적 진전 속에서 살펴보는 것은 전전의 봉건주의, 전시의 파시즘, 점령기의 민주주의 등 단일한 체제로 환원되지 않는 일본의 다원적, 구조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여성노동자를 동원하고 통제하기 위해 생성·변용되는 ‘보호’라는 명분의 정확한 쓰임새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역사적 배경과 함께 여성노동정책 내에서의 보호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보호의 이면에 감춰진 근대 일본이 추구한 여성상을 규명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로써 명분의 이면에 감춰진 동원과 규제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이며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구사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1945년 패전 이후 점령기 일본의 여성노동정책과 보호에도 주목함으로써 여성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인식 양태 및 젠더적 한계를 밝히고, 전전과 전후의 여성노동정책에서 보이는 보호의 함의를 둘러싼 연속과 단절을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오코우치 가즈오는 전전 일본의 사회정책의 본질을 국가에 의한 노동력 보전정책으로 논하고 국가가 노동자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주목한 것임을 지적했다.⁶⁾ 그는 “사회정책의 경제적 필연성은 ‘노동력’의 계속적 재생산에 대한 합리적 배려로서, 노동자 보호, 엄밀하게 말하면 ‘노동력’ 보전으로서 나타난다”고 사회정책의 핵심을 설명한다.⁷⁾ 오코우치의 이러한 관점은 전시 일본의 인구정책과 관련한 인적자원의 확보에서도 논의된다. 그는 일본 사회가 농촌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암묵적으로 남용해 온 것을 지적하며 인적자원 보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인구의 양적 증가만이 아닌, 생산력 확충에 주목하여 개개인의 질적인 향상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본 연구는 오코우치 가즈오가 제시한 노동력 보전에 착목하여 공장법에서 제시한 보호규정을 중심으로 전전과 전시, 전후 점령기의 여성노동정책에서의 보호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살펴볼 것이다. 공장법에서 규정한 보호직공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전의 농상무성과 내무성, 전시의 후생성, 전후 후생노동성은 여성노동자 보호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여성노동자를 보호받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여성노동자에게 보호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11년 성립된

4) 김경옥, 「戰時期における農村託児所研究—「津田子供の家」の設置と活動を中心にして」, 『アジア地域文化研究』13,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 2017.03; 김경옥, *Factory Labor and Childcare in Wartime Japan, Women's History Review*30(2), Taylor&Francis, 2020.06.

5) 鐘家新, 『日本型福祉国家の形成と「十五年戦争」』ミネルヴァ書房, 1998년; 高岡裕之, 『総力戦体制と「福祉国家」』, 岩波書店, 2011.

6) 大河内一男, 『社会政策(総論)』, 有斐閣, 1980; 久本憲夫, 『日本の社会政策』, ナカニシヤ出版, 2010; 久本憲夫, 「社会政策」, 『日本労働研究雑誌』No621, 2012.04.

7) 大河内一男, 『社会政策の基本問題』, 増訂版, 日本評論社, 1944, 98쪽(岡崎祐司, 「社会政策社会保障と社会福祉の課題-生活論からみた社会福祉政策研究の視点について」, 『仏教大学大学院研究紀要』20, 2016, 85쪽).

공장법에서 출발한다. 공장법에서 여성노동자는 14세 이하의 연소자와 함께 보호직공으로 분류되어 의지가 박약하고 수동적이어서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인정할 수 없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규정되었다. 공장법의 보호 규정은 전전 일본 사회에서 여성노동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근대 일본이 여성노동자의 보호에 가장 주목한 시기는 중일전쟁에서 패전으로 이어지는 총력전체제기(1937~1945)다. 일본은 급증하는 군수물자의 수요 조달을 위해, 부족한 노동력의 해결책으로 다시 산업전사라는 이름으로 보호직공인 여성노동자를 공장과 광산으로 동원했다. 목전의 전쟁 승리를 위해 전장의 남성 대신에 여성을 노동력으로 동원할 때, 일본정부가 가장 고심한 것은 여성노동정책과 인구정책의 양립이었다. 즉 임신과 출산 중심의 인구정책의 수행이 노동력으로서의 여성노동자의 역할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

1945년 패전 후, 연합군의 점령정책하에 1947년 노동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공장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보호직공으로 규정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전장에 있던 남성들이 제국의 영역에서 패전국이 된 작은 섬나라 일본으로 귀환하였을 때, 일본정부는 여성노동자 보호라는 명목과 일본적 부덕(婦德)을 내세우며 여성노동자에게 직장에서의 노동자 역할을 내려놓고 전통적인 여성의 일, 즉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신헌법하에서 여성은 참정권을 부여받아 정치적 권리를 획득했지만, 여성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보다 가정에서의 전통적 여성의 역할이 기대된 것이다. 전전의 봉건주의와 전시의 파시즘을 벗어나 전후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지만, 전전에 형성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역할을 주부, 아내, 어머니로서 일반화하고 고정했다.

여성노동정책에서 보이는 여성노동자 보호규정에 대한 주목은 전전과 전후, 즉 제국 일본과 점령정책하의 일본이 여성노동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인식의 양태와 한계를 보여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봉건적인 전전과 파시즘 하의 전시, 전후 민주주의 하의 점령기 등 각각의 다른 체제하에 전개된 여성노동정책은 여성노동자에게 단순히 노동력으로서의 역할만 요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호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필요에 따라 변화되며 기대되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주목은 제국의 타자이자 2등 국민으로 존재한 일본 여성의 위치를 재고하고 나아가 국민국가 안에서의 제국 신민과 국민의 범주로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 근대사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누락되어 비가시적 상태에 머물러 있던 여성노동자에게 시선을 집중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들을 역사의 전면으로 소환하여 보호라는 단일한 연속선상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각각의 체제 아래 추구된 여성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봉건적이며 파시즘적 제국 일본과 전후 민주주의 아래 피점령국 일본이 추구한 본질적인 여성상이 무엇인지 규명할 것이다. 근대 일본에게 있어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인구정책과 맞물려 전쟁의 승리를 넘어선 제국의 영속성과 관련된 중요사안이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전전과 전후를 막론하고 노동자 보호라기보다는 모성보호와 깊은 관계가 있고, 모성보호는 여성노동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노동정책을 보호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은 일본정부가 추구하는 ‘기대되는 여성상’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고, 현대 일본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떤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장별 구성

제1장 일본의 근대화와 여성노동자 보호의 탄생

일본의 근대화와 부국강병을 위해 공장과 광산 등 노동 현장에 뛰어든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장법이 성립된 1911년부터 대공황이 발생하는 1929년까지를 시기적 배경으로 한다. 방적산업이나 제사업 등 섬유산업 현장의 전면에 등장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규정의 성립과정과 공장법 제정 및 시행, 공장법 개정 등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할 것이다.⁸⁾ 이 시기의 공장법을 살펴보는 것은 공장법을 통해 처음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발안되어 노동 현장에서 여성노동자가 처한 상황이 근대 일본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는 공장법에서 14세 이하의 연소자와 함께 보호직공으로 규정된 후에도 1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 또한, 공장법에는 산전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노동자는 출산 직전까지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은 공장법에 비협조적이었고 이로 인해 공장법에서 정한 여성노동자 보호규정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전전기 일본의 여성노동자의 동원과 보호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이와오 사오리(岩屋さおり)를 들 수 있다. 이와오는 지쿠호탄광(筑豊炭鉱)의 여성노동자의 갱내노동금지를 둘러싼 인설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언제, 어떻게 정당화되어 여성노동자를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⁹⁾ 그러나, 일본 근대화에 산업역군으로 동원된 여성노동자 전체를 보았을 때, 여성노동자의 탄광 갱내노동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노동자의 다수를 점한 제사와 방적 등 섬유산업에서 근무한 여성노동자의 동원과 보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 1차 자료로 공장법 성립과 개정 및 시행 관련하여 전전의 농상무성, 공무성, 상공성,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료 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 등 실태 분석을 위해 『공장감독연보』, 『여공애사』 등을 참고하고, 무엇보다 공장법 제정에 다대한 영향을 미친 사회정책학자들이 주최한 사회정책학대회 자료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 보호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활용법도 주목하고자 한다.

제2장 산업합리화와 노동강화 속 흔들리는 여성노동자 보호

제2장은 뉴욕에서 대공황이 발생한 1929년부터 중일전쟁 발발 전인 1936년까지를 시기적 배경으로 한다.¹⁰⁾ 대공황의 여파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일본에서는 이미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찾아온 쇼와공황에 대공황까지 겹쳐 도시에서는 산업합리화라는 명목하에 공장 폐쇄와 조업 단축이 줄을 이었고 임금 인하와 해고로 생존의 위협을 느낀 여성노동자는 곳곳에서 쟁의와 파업으로 맞섰다. 1930년대는 일본에서 노동운동이 가장 격화된 시기로 특히 가네후치방적(가네보), 동양모슬린, 기시와다방적 쟁의는 여성노동자가 임금 인하와 정리해고에 저항한 대표적인 쟁의이다. 그중 기사와다방적 쟁의는 조선인과 일본인 여성노동자가 일치단결하여 함께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고 타카소 설립, 산전휴가, 휴게시간 요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건 특징이 있다.

본장에서는 대공황이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산업합리화라는 명목으로 해고된 섬유산업의 여성노동자

8) 김경옥, 「일본의 여성노동자의 동원과 보호에 관한 연구: “보호직공”으로 동원된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50, 일본사학회, 2019.12.

9) 岩屋さおり, 「炭鉱労働における女性労働者の排除の正当性—女性労働者の坑内労働廃止をめぐる—」, 『待兼山論叢』, 제31호,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1997.

10) 김경옥, 「근대 일본의 노동자와 농민의 공동재산으로서의 무산자타카소」, 『일본역사연구』 54, 일본사학회, 2021.04.

와 그들의 저항, 개정공장법의 시행과 보호규정 실시 여부, 무엇보다도 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공장법의 심야작업금지규정은 1929년 7월 1일부터 섬유산업에 적용되었다. 공장법과 함께 공장감독관제도가 실시되어 공장법 준수가 의무화되었지만,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동반한 규제가 감독기관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상은 공문(空文)으로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¹¹⁾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비교적 비가시적 존재로 역사의 뒤편에 머물러 있던 여성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움직임에 착목하여 여성노동자가 요구하는 보호의 의미를 공장법의 보호규정과 관계에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 가네후치방적(가네보), 동양모슬린, 기시와다방적 쟁의 관련 사료, 기록, 증언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아사히신문』과 지역신문, 『부인노동자료집성』을 활용해 사회적 반응과 여성노동자의 요구사항을 검토, 분석할 것이다.

제3장 전시사회정책과 노동정책 속 교착하는 여성노동자 보호

제3장은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1945년 패전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 이 시기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총력전을 펼쳤다. 남성의 대체 노동력으로서 여성노동자가 주목받으며 동시에 부각된 것이 전시사회정책이다.¹²⁾ 1938년 창설된 후생성은 전시사회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좌라 할 수 있다.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오코우치 가즈오(大河内一男)는 일본의 전시사회정책의 본질을 ‘국가에 의한 노동력 보전정책’으로 논하고 국가가 노동자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주목한 것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전시사회정책은 노동력의 육성 배양과 노동력의 적정 배치, 복리후생의 개선 지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장은 오코우치 가즈오가 제시한 노동력 보전에 착목하여 전시사회정책과 노동정책 속 교착하는 여성노동자 보호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인구정책을 위해 출산보국, 육아보국 등 출산과 육아가 여성노동자에게 주어진 또 다른 역할임을 살펴봄으로써 여성노동정책과 인구정책의 양립 속에서 모순되는 여성노동자 보호의 함의를 규명할 것이다.¹³⁾ 본 연구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 오코우치 가즈오의 『전시사회정책론』을 이론적 토대로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정책, 노동정책, 인구정책 관련 법령 규정과 함께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서 편찬한 『전시부인독본』(1938년), 군사공업신문에서 발행한 『여자근로관리의 요체』(1944년), 공장관리연구소에서 집필한 『전시근로관리의 제문제』(1943년) 등을 중심으로 노동현장에서 여성노동자에게 요구한 역할 등을 1937년~1945년에 발행된 잡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4장 부인공장감독관보의 활동과 여성노동자 보호의 변용

11) 후생노동성에서는 전전의 공장법에 대해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 공문(空文)으로 표현하고 있다. 검색일 20220807, https://www.mhlw.go.jp/houdou_kouhou/kouhou_shuppan/magazine/2016/08_01.html.

12) 김경옥, 「總力戰体制期における「戦時保育」と保育施設の変容」, 『アジア地域文化研究』 11,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 2015.03; 김경옥, 「戦時期における農繁期託児所の設置と活動」, 『アジア地域文化研究』 14,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 2018.03; 김경옥, 「전시기 일본여성의 광산노동과 보육: 아키타현(秋田県) 하나오카(花岡)광산을 중심으로」, 『일본비평』 20, 2019.02.

13) 김경옥, 『戦時期における女性労働と保育に関する史的研究』, 東京大学総合文化研究科, 2018.11.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1945년 패전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 부인공장감독관보 다니노 세쓰의 활동과 산업보국회, 공장법전시특례와 여성노동자 보호의 충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¹⁴⁾ 제4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다니노 세쓰는 일본 최초의 전전 유일한 부인공장감독관보로 1926년 내무성에 입사하여 노동부 감독과에서 공장감독관보로 근무 후, 1939년부터 후생성 노동국 감독과 겸 지도과에서 1945년 패전까지 공장감독관보로 활동했다. 다니노 세쓰는 일본에서도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녀는 전시기 노동행정관으로 근로보국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로보국에 앞서 여성노동자에게 무엇이 선결되어야 하는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점을 제언한다. 다니노 세쓰는 노동행정관료로서 여성노동자 문제를 직장에서의 지위, 노무관리, 모성보호, 복지 등 전반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특히 그녀가 전시기 여성노동자와 함께 일하고 기숙사에 머물며 직접 공장노동과 심야작업을 체험하고 기고한 보고서와 기사, 논문 등은 전시기 여성노동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자료이다.

오코우치의 이론을 토대로 전시사회정책의 핵심이 노동력 보전이었음에 착안하여 이를 토대로 다니노 세쓰의 시선을 통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의미를 살펴본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전전과 전후를 막론하고 모성보호와 깊은 관계가 있고 모성보호는 여성노동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총력전체제기 일본의 여성노동정책은 인구정책과의 양립 속에서 여성의 신체를 중심으로 한 모성보호에 중점을 둔 보호와 규제를 교차하며 여성의 동원을 강제했다.

다니노 세쓰가 근본적으로 추구한 여성노동자 보호는 여성의 직업을 통한 지위 향상이었다. 그녀는 여성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경제적인 독립과 지위 향상, 생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전시기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과학적, 사회적 고찰을 더한 합리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총력전체제기 행정관료로서 일본의 여성노동정책과 전시사회정책에 기여했다.

그녀의 논문과 보고서 등의 기록은 동시대를 산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여성노동자 보호의 의미와 그 한계를 말해 준다. 즉, 총력전체제기 기계공장에서 여성노동자의 신체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취해진 작업의 간소화가 도리어 여성 임금을 억제했고 여성의 노동은 단순, 반복 작업이라는 이유로 노동 가치가 평가 절하되었다. 그녀는 여성노동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취해진 작업의 단순화와 간소화가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의 여성을 온전하게 설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 ‘규제’로서 작용한 것임을 지적했다. 여성노동자 보호에 관한 그녀의 문제의식은 전후 일본의 노동기준법의 여성노동자 보호규정과 노동조합법 제정에 일조했다. 그녀가 제시한 정책적 제언은 여성의 지위, 노동환경, 모성보호 등 현대 일본의 여성노동에서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현대 일본의 여성노동을 이해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총력전체제기 행정관료로서의 시대적 제약과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녀의 논문과 보고서 등의 기록을 통해 동시대를 산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여성노동자 보호와 규제의 간극에 놓인 그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총력전체제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여 이 시기에 발행된 『제국의회회의록』을 비롯하여 『내무후생시보』, 『사회정책시보』, 『아사히신문』,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자료, 『여성운동자료집성』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다니노 세쓰가 기고한 『산업복리』, 『사회사업』, 『후생일본』 등의 기록을 통해 여성노동자가 처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과중한 생활 부담 등의 상황과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14) 김경옥, 「일본의 근대화와 여성노동자 ‘보호’ - 다니노 세쓰(谷野せつ)의 기록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59, 일본사학회, 2022.12.

제5장 점령기 여성노동자 보호의 재생산(1945~1952)

제5장은 1945년 8월 패전 이후부터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전까지의 점령기를 배경으로 한다. 이 시기 일본은 공습으로 도시 곳곳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상태에서 전후 복구와 경제부흥을 위해 노동력이 필요했다. 다만, 전장에서 일본 남성이 귀환하자, 일본 정부는 여성노동자에게 일본적 부덕과 모성보호를 명목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일본 여성과 관련된 점령기의 가장 큰 특징은 참정권 획득을 통한 여성해방이다. 일본 여성의 참정권 획득은 ‘주어진’ 또는 ‘획득한’ 참정권이라는 여성의 주체성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진행된다. 점령기의 일본 여성은 부인참정권이라는 정치적 권리를 획득했지만, 여성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방향과 사회적 인식은 전통적 여성의 일로 간주된 가정의 영역에 여성이 머물기를 강제했다. 1947년 9월 일본정부는 부인노동문제, 연소자노동문제, 그리고 일반부인문제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노동성 산하에 부인소년국을 설치하고 초대국장으로 야마카와 기쿠에(山川菊栄)를 선임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참정권 획득으로 주어진 여성해방의 의미와 부인소년국의 활동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가장의 우선권을 규정한 전전의 메이지민법이 폐지되고 1947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지만, 신민법하에서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전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를 통해 전전과 전후의 여성노동자 보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 고찰할 것이다. 점령기 대표자료인 <프란케문고>와 『야마카와 기쿠에 전집』, 『부인운동자료집성』, 『관보』, 『후생시보』, 『아사히신문』 등을 자료로서 분석할 것이다. 패전 이후 민주주의 하에서 신시대를 맞이한 일본 사회에서 전후 여성노동정책에서 여성노동자 보호 규정이 어떻게 재생산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구는 근대 일본의 여성노동정책을 여성노동자 보호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역사학적 연구이다. 전전의 봉건주의, 전시의 파시즘, 전후 점령기의 민주주의라는 각각의 다른 체제하의 여성노동정책에서 실시된 보호규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근현대 일본 사회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라는 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학적 의미와 젠더적 한계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고, 이로써 전전부터 전후에 이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근대 일본이 추구한 여성상과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가시적 존재였던 일본의 여성노동자를 역사의 전면으로 소환함으로써 마이너리티 연구의 가능성을 밝히고 일본 근대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확장된 시야를 제공해 통합적이며 총체적으로 전체상의 이해를 도모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추구된 여성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그 본질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당대 일본 여성의 권익 신장과 모성보호를 주장하던 여성 지식인들의 언설과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오늘날 일본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가진 한국에 있어서도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남녀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을 가늠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佐藤千登勢,『軍需産業と女性労働：第二次世界大戦下の日米比較』,彩流社,2003年.

荻野美穂,『「家族計画」への道－近代日本の生殖をめぐる政治』,岩波書店,2008年:「人口政策と家族－国のために産むことと産まぬこと」,『アジア・太平洋戦争3－動員・抵抗・翼賛』岩波書店,2006年.

鐘家新,『日本型福祉国家の形成と「十五年戦争」』,ミネルヴァ書房,1998年.

牟田和恵,『戦略としての家族－近代日本の国民国家形成と女性』,新曜社,1996年:「日本近代化と家族－明治期「家族国家観」再考」,総合女性史研究会日本女性史論集3,『家と女性』,吉川弘文館,1997年.

岩尾さおり,「炭鉱労働における女性労働者の排除の正当性:女性労働者の坑内労働廃止をめぐって」,『待兼山論叢』第31号,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1997年.

鈴木裕子編,『日本女性運動資料集成』第7巻,不二出版,1995年.

勝目テル,『未来にかけた日々』,平和ふじん新聞社,1961年.

一番が瀬康子他,『日本の保育』,医歯薬出版,1962年.

広田寿子,『現代女子労働の研究』,労働教育センター,1979年.

青木延春,『優生結婚と優生断種』,龍吟社,1941年.

池見猛,『断種の理論と国民優生法の解説』,巖松堂書店,1940年.

太田長次郎・財津吉文述・工場管理研究所,『昭和十九年度改正健康保険法要義』,三和書房,1944年.

大塚政光,『最低生活研究』,株式会社三井本社調査部,1944年.

岡崎文規,『新東亞確立と人口対策』,千倉書房,1941年.

岡崎文規,『戦時下の乳幼児保護問題』,一元社,1943年.

大西清治・工場管理研究所編,『女子勤労管理の実際』,三和書房,1944年.

角銅利生,「福岡県厚生事業現地報告」,『厚生問題』第28巻 第4号,1943年.

金子英雄述・工場管理研究所,『賃金統制の新段階』,三和書房,1944年.

狩野廣之,『女子の職場配置-女子勤労管理全書第三巻』,東洋書館,1943年.

館稔,『人口問題説話』,汎洋社,1943年.

桐原葆見,『月経と作業能力,女子の生理的週期と作業能の波動に関する実験並に統計的研究』,東洋書館,1943年.

桐原葆見,『女子勤労-女子勤労管理全書第1巻』,東洋書館,1944年.

大河内一男,『社会政策の基本問題』,増訂版,日本評論社,1944年.

軍事工業新聞,『女子勤労管理の要諦』,軍事工業新聞出版局,1944年.

工場管理研究所,『戦時勤労管理の諸問題』,興亞文化協會,1943年.

『工場監督年報』,(第18回)内務省社会局労働部,1933年.

国民精神総動員中央聯盟編,『戦時婦人読本』,日本青年教育会出版部,1938年 5月.

細井和喜蔵,『女工哀史』,改造社,1925(『女工哀史』,岩波書店,2001年)

杵淵義房,『本邦社会事業』,冬夏社,1922年.

【토론문】

「근대 일본의 여성노동과 여성노동자 ‘보호’」에 대한 토론문

박미아(서강대학교)

1) 저술을 염두에 둔 구성을 프리뷰 형태로 소개하는 내용이 아닌가 추정한다. 본 토론자는 각 장에 대한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고, 목차와 발표 내용을 통해 대략의 흐름만을 수박 겉핥기로 접하게 된 상황이라 발표자의 수준에 맞는 토론을 펼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해 둔다.

2) 토론자는 재일조선인, 코리안 문제를 주요 주제로 연구해 왔기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주목하게 된다. 그런데 본 발표에서는 ‘제국의 노동자’ 범위에 포함되었을 재일조선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주제 범위를 좁혀 일본 여성노동자에게만 집중하겠다는 의도인가, 혹은 추가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있는가.

3) 2)의 문제의식과 연결된 것으로 발표 가운데 ‘이항대립적 관계’에 중시한 연구들을 언급하였다. 그러한 관계 설정은 식민지와 피식민지 국민의 관계라는 상위 개념으로 시작해 하위개념으로 이어나가면 재일조선인 여성노동자에게 관점이 연장된다. 발표 내용 전반에서 그러한 점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4) 재일조선인의 사례를 들어보면 한 신체에 병존할 수 없는 가치기준을 여성에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장 여성 노동자에게 ‘노동자스러움’을 강조하면서 가정 내에서는 현명한 아내와 주부, 슬기롭고 주도적인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주입하려는 형태가 그렇다고 하겠다. 이는 여성 일반에 투영하는 사회 주류 세력의 가치관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노동법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모성 보호 이데올로기’, 여성 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그런 가치관과 어떻게 병존 가능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일본의 수용태도를 알고 싶다.

【한일관계사학회 보고사항】

1. 2023년 학회 월례발표회

- 제205회 월례발표회 : 2023년 3월 11일(토)

2. 《한일관계사연구》 79집 발간

- 《한일관계사연구》 79집이 2022년 2월 28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80집은 2022년 5월 31일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논문 게재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2달 전인 2022년 3월 31일까지 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문을 투고하실 때 심사비 6만원(심사자 3인)을 입금해 주시면, 심사비 입금확인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논문게재비는 일반논문 10만원, 연구비수혜논문 30만원입니다.

3. 회비납부 안내

우리 학회는 선생님들이 납부하시는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신회비] • 일반회원 : 40만원(15년限) • 기관회원 : 50만원(15년限)

[연회비] • 일반회원 : 3만원 • 기관회원 : 4만원

• 학생회원(학부생&석사과정생) : 1만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217002-04-676500 <예금주> 조인회